

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000550-01

www.moleg.go.kr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2020. 1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의원입법 개관
- 의원입법 지원업무 개관
- 입법단계별 의원입법 지원업무 추진절차
- 의원입법 검토기준
-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활용



법제처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일러두기



이 편람은 의원입법 발의부터 공포까지 의원입법의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업무의 절차·방법·내용 등을 종합·정리한 것으로서, 의원입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편람은 의원입법의 국회심의과정, 각 입법단계별 정부의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 의원입법 검토기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 의원입법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로서 법제처 직원뿐 아니라 각 부처 공무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의원입법 지원업무를 위한 정부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인 의원입법지원시스템 활용방법도 자세히 수록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CONTENTS



장

의원입법 개관



1 의원입법의 의의	3
1) 의안의 개념	3
2) 의원입법의 개념	3
3) 의원입법의 요건	4
4) 관련 용어 해설	5
2 의원입법의 현황	8
1) 의원입법 발의 현황	8
2) 의원입법 처리 현황	9
3) 법률안 유형별 발의 통계	10
4)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접수 건수	11
5) 대통령 임기별 법률안 발의 통계	12
3 의원입법 과정	14
1)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제안)	14
2) 위원회 회부	18
3) 위원회 심사	20
4)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26
5)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7
6) 전원위원회 심사	28
7) 안건의 신속처리	29
8) 본회의 심의	29
9) 무제한토론	30
10) 정부이송 및 공포	30
11) 환부(還付)와 재의(再議)	30
12) 대통령령·총리령에 대한 검토	31

2장

의원입법 지원업무 개관



1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목적 및 필요성	35
2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조직	37
3 의원입법 지원업무 절차	39

3장

입법단계별 의원입법 지원업무 추진절차



1 법안 발의 단계에서의 의원입법 지원	43
1) 의원입법 검토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집 및 제공	43
2) 의원입법 모니터링 및 법안 처리현황 상황보고	45
3) 의원입법 발의사실 통보	45
2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의원입법 지원	46
1)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부처협의	46
2)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의견조정	55
3)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처리	90
3 그 밖의 의원입법 지원 업무	94
1) 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자 연찬회 개최	94
2) 의원입법 세미나 개최	101

CONTENTS

4장

의원입법 검토기준



1 검토 대상	107
2 검토기준 및 검토사례	108
1) 법리적 쟁점의 유무	108
2)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121
3) 조세의 감면 여부	124
4)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126
5)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128
6)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132
7) 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 여부	135

5장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활용



1 의원입법 지원 업무 소개	141
1) 의원입법의 심사 절차	141
2)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	142
3)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소개	143
2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사용자 준비사항	146
1) 시스템 이용 대상	146
2) 시스템 접속	146
3) 회원가입 및 로그인	147
4) 사용자정보 현행화	152

3 법제처용 매뉴얼	153
1) 시스템 접속	153
2) 의원 법률안 검토	154
3) 법제처 현황·관리	161
4) 국회입법현황	164
5) 자료실 (현황/통계)	165
6) 통합검색	165
7) 질의답변/FAQ	166
8) 의원입법 지원 소개	166
4 소관부처용 매뉴얼	167
1) 법무담당부서의 확인 및 법안 검토 담당부서 지정	167
2) 소관부서의 의견조회 실시 및 협의결과 등록	171
5 관계부처용 매뉴얼	173
1) 법무담당부서의 확인 및 법안 검토 담당부서 지정	173
2) 관계부처 담당부서의 의견제시 및 등록	177
6 그 밖의 활용 정보	179

6 장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187
2 의원입법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218
3 주요 홈페이지 안내	219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1 장

의원입법 개관

1. 의원입법의 의의
2. 의원입법의 현황
3. 의원입법 과정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의원입법의 의의



01 • 의안의 개념

국회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의 심의를 통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통상 “의안”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의안의 종류에는 헌법개정안,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등이 있으며, 이 중 법률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02 • 의원입법의 개념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도 부여하고 있다.

보통 “의원입법”이란 의원발의 법률안(bills)이 법률(law)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원발의 법률안(Member’s Bills)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부제출 법률안(Government’s Bills)의 상대개념으로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좁은 의미로 의원입법을 말할 때에는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률안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의회 내 위원회 발의 법률안을 포함하게 되며, 우리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의원입법”은 후자까지를 포함한다.

구분	제안권자		근거 규정
의원입법	국회	국회의원	• 헌법 §40,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국회법 §51, 국회의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	
정부입법	정부		• 헌법 §52,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03 • 의원입법의 요건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국회법」 §79①). 종전에는 20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2003년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국회의 원 수의 발의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의사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없는 의안은 국회심회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이다. “10명 이상의 찬성”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10명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발의자가 1명이면 찬성자는 9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안은 국회의 회기 중이나 폐회기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제10대 국회까지는 폐회 중에 제출하더라도 다음 국회가 집회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회부 받은 후에 심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폐회 중에도 의원이 의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된 의안의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81①).

그리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법안실명제를 채택하여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국회법」 §79③). 또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79의2①·②).

이렇게 발의된 법률안은 「국회법」과 국회의사에 관한 각종 국회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49).

04 • 관련 용어 해설

 의안·안건·의제(議案·案件·議題)

- 의안 :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 안건 : 국회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한다.
- 의제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진 심의 대상 안건의 제목을 말한다.

 발의·제출·제안·제의(發議·提出·提案·提議)

헌법과 「국회법」에서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발의와 제출을 포함하여 “제안”이라고도 한다.

-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 제출 : 정부가 의안을 낼 때
-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 제의 : 의장이 의안을 낼 때

 의결·부결·폐기(議決·否決·廢棄)

- 의결 : 합의체의 전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그 결과는 가결·부결·동의·승인·채택 등으로 나타나며, 가결(可決)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부결 :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의결의 형태이다.
- 폐기 :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적 조치로서 국회에서 의안이 폐기되는 경우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 ①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의원(30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기간(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내에 본회의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국회법」 §87)

② 「국회법」 상 의결시한이 경과할 경우(「국회법」 §112⑦·§130②)

③ 의안의 제안취지가 상실된 경우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헌법 §51)

원안·수정안·대안·위원회안(原案·修正案·代案·委員會案)

- 원안 : 국회에 최초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말한다.
- 수정안 : 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여 추가·삭제·변경 등을 행하는 것을 수정이라 하며, 그 수정내용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 대안 : 대안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소관 위원회 또는 의원이 원안을 폐기하고 이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이 바뀔 정도로 원안의 체계 및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전혀 다른 내용으로 새로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대안에 반영된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된다.
- 위원회안 :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입안한 안으로서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의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대안과는 달리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동의(動議)

의원 또는 위원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안(案)을 갖추는 등의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회의장에서 직접 발의하는 것을 말한다. 동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국회법」 §89).

철회(撤回)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이 때 발의자가 아닌 찬성자의 동의(同意)는 필요하지 아니하지만, 2명 이상 공동발의인 경우에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 §90)

번안(飜案)

위원회에서의 번안은 위원회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 번안은 해당 위원회 위원의 동의(動議)로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한다(「국회법」 §91). 번안 동의가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Memo



01 • 의원입법 발의 현황

제헌국회 이래 양적인 측면에서 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우세하다가 제12대 국회부터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을 추월하여 현재에는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대수	총 제안 건수	의원입법 건수(비중)	정부입법 건수(비중)
제헌국회('48~'50)	248	105 (42.3%)	143 (52.7%)
제2대('50~'54)	420	202 (48.1%)	218 (51.9%)
제3대('54~'58)	410	171 (41.7%)	239 (58.3%)
제4대('58~'60)	325	124 (38.1%)	201 (61.9%)
제5대('60~'61)	298	139 (46.6%)	159 (53.4%)
국가재건최고회의('61~'63)	1,158	545 (47.1%)	613 (52.9%)
제6대('63~'67)	658	416 (63.2%)	242 (36.8%)
제7대('67~'71)	535	244 (45.6%)	291 (54.4%)
제8대('71~'72)	49	14 (28.6%)	35 (71.4%)
비상국무회의('72~'73)	271	0 (0%)	271 (100%)
제9대('73~'79)	633	154 (24.3%)	479 (75.7%)
제10대('79~'80)	130	5 (3.9%)	125 (96.1%)
국가보위입법회의('80~'81)	189	33 (17.5%)	156 (82.5%)
제11대('81~'85)	491	204 (41.5%)	287 (58.5%)
제12대('85~'88)	379	211 (55.7%)	168 (44.3%)
제13대('88~'92)	938	570 (60.8%)	368 (39.2%)
제14대('92~'96)	902	321 (35.6%)	581 (64.4%)
제15대('96~'00)	1,951	1,144 (58.6%)	807 (41.4%)
제16대('00~'04)	2,507	1,912 (76.3%)	595 (23.7%)
제17대('04~'08)	7,489	6,387 (85.3%)	1,102 (14.7%)
제18대('08~'12)	13,912	12,219 (87.8%)	1,693 (12.2%)
제19대('12~'16)	17,822	16,729 (93.9%)	1,093 (6.1%)
제20대('16~'20)	24,139	23,045 (95.5%)	1,094 (4.5%)

02 • 의원입법 처리 현황

제15대 국회 이후 의원입법의 가결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발의건수 증가폭이 더 커서 의원입법의 가결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

국회 대수	의원입법					정부입법				
	제출 건수	가결 건수	통과 건수	가결률	통과율	제출 건수	가결 건수	통과 건수	가결률	통과율
제헌	105	51	60	48.6%	57.1%	143	97	106	67.8%	74.1%
제2대	202	80	104	39.6%	51.5%	218	135	150	61.9%	68.8%
제3대	171	71	82	41.5%	48.0%	239	83	91	34.7%	38.1%
제4대	124	32	40	25.8%	32.3%	201	43	53	21.4%	26.4%
제5대	139	25	36	18.0%	25.9%	159	39	43	24.5%	27.0%
제6대	416	178	235	42.8%	56.5%	242	154	200	63.6%	82.6%
제7대	244	123	151	50.4%	61.9%	291	234	255	80.4%	87.6%
제8대	14	7	8	50.0%	57.1%	35	33	34	94.3%	97.1%
제9대	154	84	102	54.5%	66.2%	479	460	470	96.0%	98.1%
제10대	5	3	3	60.0%	60.0%	125	98	98	78.4%	78.4%
제11대	204	84	104	41.2%	51.0%	287	257	279	89.5%	97.2%
제12대	211	66	120	31.3%	56.9%	168	156	164	92.9%	97.7%
제13대	570	171	352	30.0%	61.8%	368	321	355	87.2%	96.5%
제14대	321	119	167	37.1%	52.0%	581	537	561	92.4%	96.6%
제15대	1,144	461	687	40.3%	60.1%	807	659	737	81.7%	91.3%
제16대	1,912	517	1,031	27.0%	53.9%	595	431	551	72.4%	92.6%
제17대	6,387	1,352	2,938	21.2%	46.0%	1,102	563	883	51.1%	80.1%
제18대	12,220	1,663	4,890	13.6%	40.0%	1,693	690	1,288	40.8%	76.1%
제19대	16,729	2,415	6,627	14.4%	39.6%	1,093	379	803	34.7%	73.5%
제20대	23,045	2,890	8,061	12.5%	35.0%	1,094	305	738	27.9%	67.5%

1) 원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안에 반영되어 그 원안을 폐기시키는 처리형태인 '대안반영폐기'도 실질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가결 + 대안반영폐기'된 법률안을 '국회 통과'로 보고 그 건수 및 비율을 별도로 산정해보았다.

03 • 법률안 유형별 발의 통계

구분	주체	일부개정	전부개정	폐지	제정	계	합계
17대	정부	820 (74.4%)	111 (10.1%)	14 (1.3%)	157 (14.2%)	1,102 (100.0%)	7,489
	의원	4,967 (86.7%)	57 (1.0%)	85 (1.5%)	619 (10.8%)	5,728 (100.0%)	
	위원장	531 (80.6%)	46 (7.0%)	7 (1.1%)	75 (11.4%)	659 (100.0%)	
18대	정부	1,492 (88.1%)	81 (4.8%)	35 2.1%)	85 (5.0%)	1,693 (100.0%)	13,913
	의원	10,297 (92.0%)	77 (0.7%)	30 (0.3%)	787 (7.0%)	11,191 (100.0%)	
	위원장	913 (88.7%)	55 (5.3%)	0 (0.0%)	61 (5.9%)	1,029 (100.0%)	
19대	정부	1,012 (92.6%)	22 (2.0%)	5 (0.5%)	54 (4.9%)	1,093 (100.0%)	17,822
	의원	14,431 (93.4%)	65 (0.4%)	19 (0.1%)	929 (6.0%)	15,444 (100.0%)	
	위원장	1,192 (92.8%)	21 (1.6%)	0 (0.0%)	72 (5.6%)	1,285 (100.0%)	
20대	정부	1,027 (93.9%)	20 (1.8%)	0 (0.0%)	47 (4.3%)	1,094 (100.0%)	24,139
	의원	20,412 (94.5%)	82 (0.4%)	67 (0.3%)	1,031 (4.8%)	21,592 (100.0%)	
	위원장	1,374 (94.6%)	17 (1.2%)	0 (0.0%)	62 (4.8%)	1,453 (100.0%)	

04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접수 건수

순서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	
	소관상임위	건수	소관상임위	건수
1	국회운영위원회	357	국회운영위원회	533
2	법제사법위원회	1,300	법제사법위원회	1,947
3	정무위원회	1,187	정무위원회	1,687
4	기획재정위원회	1,660	기획재정위원회	2,119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768	교육위원회	943
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29
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2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5
8	외교통일위원회	23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59
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9	외교통일위원회	323
10	국방위원회	430	국방위원회	549
1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8	안전행정위원회	164
12	안전행정위원회	2,380	행정안전위원회	3,050
1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6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13
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852
1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97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02
16	지식경제위원회	5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98
17	보건복지위원회	1,996	보건복지위원회	2,590
18	환경노동위원회	1,223	환경노동위원회	2,145
19	국토교통위원회	1,613	국토교통위원회	2,250
20	국토해양위원회	78	정보위원회	34
21	정보위원회	32	여성가족위원회	412
22	여성가족위원회	376	특위	22
23	행정안전위원회	49	미확정	3
24	특위	151		
25	미확정	8		
	합계	17,819	합계	24,139

05 • 대통령 임기별 법률안 발의 통계

노태우 (13대)	제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1988.02.25~1988.12.31	191	31	64	286
	1989.01.01~1989.12.31	184	48	89	321
	1990.01.01~1990.12.31	34	20	104	158
	1991.01.01~1991.12.31	53	9	111	173
	1992.01.01~1992.12.31	27	3	54	84
	1993.01.01~1993.02.24	13	2	10	25
	총 합계	502	113	432	1,047
김영삼 (14대)	제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1993.02.25~1993.12.31	54	14	179	247
	1994.01.01~1994.12.31	67	23	172	262
	1995.01.01~1995.12.31	88	26	165	279
	1996.01.01~1996.12.31	171	18	168	357
	1997.01.01~1997.12.31	163	52	138	353
	1998.01.01~1998.02.24	21	4	18	43
	총 합계	564	137	840	1,541
김대중 (15대)	제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1998.02.25~1998.12.31	168	122	281	571
	1999.01.01~1999.12.31	276	140	202	618
	2000.01.01~2000.12.31	250	25	199	474
	2001.01.01~2001.12.31	448	62	135	645
	2002.01.01~2002.12.31	324	59	109	492
	2003.01.01~2003.02.24	46	6	9	61
	총 합계	1,512	414	935	2,861
노무현 (16대)	제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2003.02.25~2003.12.31	560	98	139	797
	2004.01.01~2004.12.31	840	64	206	1,110
	2005.01.01~2005.12.31	1,817	174	242	2,233
	2006.01.01~2006.12.31	1,452	165	325	1,942
	2007.01.01~2007.12.31	1,476	192	319	1,987
	2008.01.01~2008.02.24	145	32	14	191
	총 합계	6,290	725	1,245	8,260

이명박 (17대)	제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2008.02.25~2008.12.31	2,706	83	549	3,338
	2009.01.01~2009.12.31	3,009	272	399	3,680
	2010.01.01~2010.12.31	2,439	166	406	3,011
	2011.01.01~2011.12.31	2,893	494	330	3,717
	2012.01.01~2012.12.31	2,891	106	294	3,291
	2013.01.01~2013.02.24	585	14	16	615
	총 합계	14,523	1,135	1,994	17,652
박근혜 (18대)	제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2013.02.25~2013.12.31	4,349	283	240	4,872
	2014.01.01~2014.12.31	3,707	330	309	4,346
	2015.01.01~2015.12.31	3,976	465	238	4,679
	2016.01.01~2016.12.31	4,369	255	338	4,962
	2017.01.01~2017.04.19	1,693	117	45	1,855
	총 합계	18,094	1,450	1,170	20,714
황교안 권한대행	제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2017.04.20.~2017.05.09	38	0	5	43
	총 합계	38	0	5	43
문재인 (19대)	제안일자	의원	위원장(대안)	정부	합계
	2017.05.10~2017.12.31	3,763	228	213	4,204
	2018.01.01~2018.12.31	5,891	446	275	6,612
	2019.01.01~2019.12.31	5,706	333	211	6,250
	2020.01.01~2020.05.29	243	221	13	477
	총 합계	15,603	1,228	712	17,543



Memo



의원입법 과정은 일반적으로 크게 i) 법률안의 발의, ii) 발의된 법률안의 심의·의결, iii) 의결된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의 3단계로 구분된다. 의원입법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 페이지 그림과 같다.

01 •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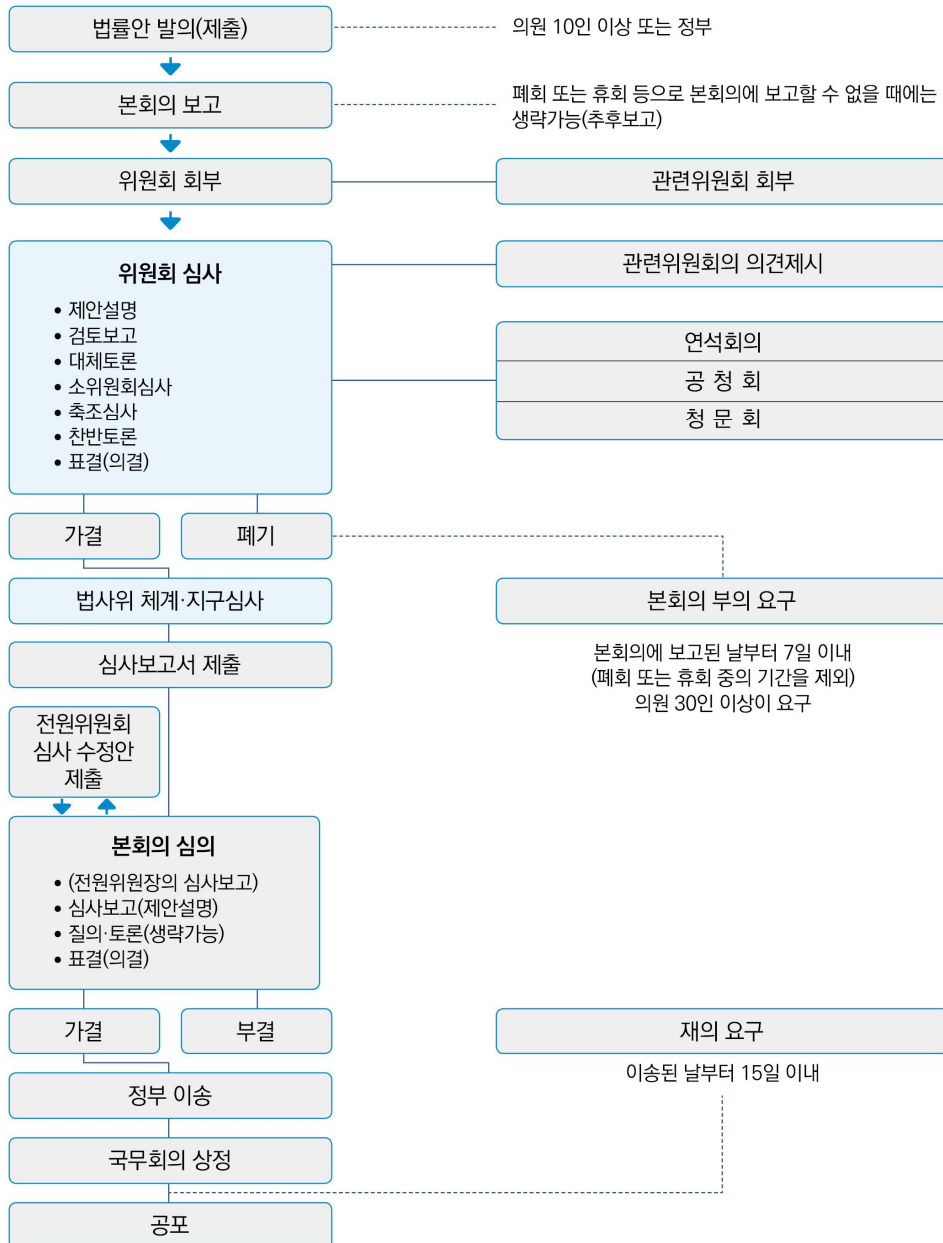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입안되는 법률안의 종류에는 ① 의원발의 법률안과 ② 위원회제안 법률안이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

① 입법 준비 단계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연간 입법계획의 수립이라는 제도나 절차가 없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계획과 재량에 따라 법률안의 발의가 이루어진다. 국회의원 각자가 독자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특정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서 입법동기를 찾아 입법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속 정당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률안은 정당 내 정책기구의 결정 또는 정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법률안의 발의는 정당 소속 의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각 정당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정책위원회 등 정책을 입안하는 기구를 두어 법률안 발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당에 소속된 전문 위원은 정책을 개발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대국민 관계에 있어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당 차원에서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② 법률안 기초 단계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보좌직원에게 지시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국회 내 설치된 법제지원 기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의원입법을 지원하는 법제지원기구로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가 있고, 비영리법인인 국회 미래연구원이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등의 법제지원을 위한 조직으로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과 각종 법제자료의 제공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의 독자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기관으로서 의원입법과정에서는 의원입법의 준비단계에서 의원의 의뢰를 받아 법률안 입안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특히 의원입법과정에서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그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원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법제지원기구의 지원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최근 그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²⁾

③ 비용추계서 작성 단계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통하여 작성되거나 의원실에서 직접 작성한 법률안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비용추계서를 마련하거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79의2,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3). 비용추계서의 작성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거나 의원실 등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회 제출 단계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원배, 국회가 보는 의원입법의 현황 및 의원입법과정에서의 국회의 책임과 역할, 2012. 6. 28 입법선진화 포럼

위원회제안 법률안

① 제안자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국회법」 §51).

② 소관 사항

상임위원회는 안전이 회부됨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36·§37·§51).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국회법」 제37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정 사항에 대한 법률안의 입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도 그 목적 범위에서 법률안을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유형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위원회안”과 “위원회제출 대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원회안”은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입안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위원회제출 대안”은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하는 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즉, “대안”은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사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반하여 “위원회안”은 원안의 존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④ 제안절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제안 법률안 역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재정수반 요인이 있으면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79의2①).

위원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이미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지만, 그 의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8).

본회의 심의 중에도 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사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94).

02 • 위원회 회부

법률안 등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① 소관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

법률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을 결정하되,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그 소관을 결정한다.

•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개정법률안의 경우 법률안 연혁, 제정법률안의 경우 법률안의 내용, 주무부처와 「정부조직법」 및 부처별 직제 등 내용적·형식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 특히 제정법률안에서 기존 정부부처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영역을 제도화하려는 경우에는 어느 부처업무와 연관성이 높은지, 어느 부처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법률안에서 주무부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소관 부처를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해당 법률안을 소관하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정법률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제정법률안 공포 시 부서한 국무위원의 소속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로 회부한다.

-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부서한 국무위원을 참조하여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 특히, 소관부처가 둘 이상이어서 둘 이상의 국무위원이 공동으로 부서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과 직접 관련된 1개 위원회를 소관으로 결정한다.

- 법률안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 위원회를 결정한다(「국회법」 §37②, §81②).

- 위원회의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안의 경우

의장은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81③).

② 법률안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국회법」 §44①), 구성 시에 소관 사항이 정하여지게 된다. 그 외에도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국회법」 §82①),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국회법」 §82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명시적으로 법안심사권이나 의안심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권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법률안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하는 경우 그 법률안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국회법」 §83). 관련위원회의 의견은 소관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아니하고 소관 위원회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참고의견으로 활용된다.

- 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여러 부처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03 • 위원회 심사

위원회의 역할은 의안에 대한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위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위원회 심사는 입법예고 → 위원회 상정 → 제안자의 취지설명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대체토론 → 공청회·청문회 → 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표결의 순서를 밟게 된다.

입법예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국회법」 §82의2). 다만, i)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ii)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에는 국회공보 등에 임의적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예고제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는데, 2011. 5. 19. 「국회법」 개정시(2012. 5. 30. 시행) 국회공보 외에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였고, 입법예고를 의무화하되 그 예외사유를 법정한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입법예고기간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개정 「국회법」에서는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10일 이상으로 법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상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또한 2003. 2. 4. 부터 2012. 5. 30.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정기회 기간 중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으로 제한하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였으나(법률 제6855호 「국회법」 §93의2②), 입법환경이 변화하여 연중 법률안 처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회법」을 개정(2012. 5. 25. 개정, 5. 30. 시행)하면서 이 규정을 삭제하였다.

제안자의 취지설명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大體討論)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따라서 안전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까지 마친 다음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표결 전에 실시하는 찬반토론과는 구별된다.

대체토론은 안전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전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전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청문회(公聽會·聽聞會)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전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위원회의 심사 및 보고

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끝나면 반드시 상설소위원회에 안전을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두는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국회법」 §58②). 다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전과 직접 관련된 안전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58④).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하여 회부된 법률안 등 의안을 심사할 수 있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안·대안의 제시뿐만 아니라 위원회안의 기초 등을 행하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일반적으로 「국회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소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축소 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전심사가 줄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국회법」 §57⑦). 그리고 소위원회의 검토의견 및 의결은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존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국회법」은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는 실질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소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법률안의 수가 급증하고 법률안의 내용 역시 전문화되면서 위원회의 분업화가 요구되는 등의 이유로 법률안의 심사 단위로서 소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조정위원회

위원회는 안전에 대하여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전조정위원회를 두고, 안전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아 30일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다. 신속처리대상안전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전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활동을 종료한다.

축소심사(逐條審査)

축소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전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소 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贊反對論)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표결(表決)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심사기간의 지정

의장은 i) 천재지변의 경우, ii)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iii)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국회법」 §85①②).

법률안 통과형태

①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②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③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④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04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위원회에서 심의·채택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86).

“체계의 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균형유지, 자체조항 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고, “자구의 심사”란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는 제2대 국회인 1951년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채택해 오고 있다.

법률안의 상정시기 및 심사절차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안이 회부되어 5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한다(「국회법」 §59). 법률안이 회부되어 5일이 경과한 후에도 상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59의2).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절차는 상임위원회 절차와 동일하다.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수정의견이 있으면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한 수정 의결을 한 뒤, 그 심사결과를 해당 법률안 소관위원회에 통보하고, 소관위원회에서는 그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심사의 범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은 어디까지나 체계와 자구 심사에 한하고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면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등 상위법이나 타법과 상충·저촉될 때에는 국가법체계의 통일·조화를 위하여 체계심사의 대상이 된다.

심사기간의 지정

의장은 i) 천재지변의 경우, ii)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iii)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국회법」 §86②).

또한 2012. 5. 25. 개정된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소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의장은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다(「국회법」 §86③·④).

05 •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6 • 전원위원회 심사

전원위원회란 의원 전원이 위원이 되어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전원위원회가 개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최 요건을 갖추더라도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회법」 §63의2①).

- i) 심사대상안건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일 것
- ii)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것

전원위원회의 개최시기

전원위원회 개최시기는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인데(「국회법」 §63의2①), “해당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는 날”에 최초로 개최하고,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는 후”에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5).

전원위원회의 권한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63의2②).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전원위원회의 위원장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된다. 국회부의장은 현재 2인이므로 전원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안건별로 의장이 해당 부의장을 지명하면 지명된 부의장이 전원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전원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7 • 안건의 신속처리

“안건의 신속처리”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날부터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되,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마련된 법안신속처리제도(Fast Track)이다(「국회법」 §85의2).

08 • 본회의 심의

“심의”란 의회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하는데, 현행 「국회법」에서는 본회의 심사·논의를 “심의”라 하고,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논의는 “심사”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의원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법률안에 대하여 최종의결을 하게 된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에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와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09 • 무제한토론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전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할 수 있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무제한 토론 종결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한 토론 종결동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또는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 하도록 하였다. (『국회법』 §106의2)

10 • 정부이송 및 공포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11 • 환부(還付)와 재의(再議)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헌법 §53②③).

법률안 재의요구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법률안 재의의 건」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여 상정·처리한다.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게 된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재의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헌법 §53④),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부결 또는 폐기(의결에 부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된 경우)된다.

12 • 대통령령·총리령에 대한 검토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전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바로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회로부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관한 검토결과를 송부 받으면 그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국회법」§98의2)



Memo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 장

의원입법 지원업무 개관

1.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목적 및 필요성
2.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조직
3. 의원입법 지원업무 절차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법률안은 국회의원이거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뿐 아니라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정부 내 입법절차 과정에서 법률 집행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게 된다. 즉, 예산, 인력 등 인적·물적 자원을 미리 확보하거나 계획한 상태에서 입법을 하게 되므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법률 집행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 없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법률안 집행을 위한 준비를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담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본래 의도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인 정부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과 정책 집행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되어야 본래의 입법 의도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법률안을 집행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 인력이 필요하거나, 법률안의 내용에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소관부처에서는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 인력의 확보 방안 및 하위법령의 마련 작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예산도 없고 재정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에는 당장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법률안의 취지가 정부의 정책방향과 크게 맞지 않거나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여 향후 법률의 집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정부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집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정책에 대하여 부처 간 입장이 다름에도

현재 정부 내에서 수행하는 의원입법 지원업무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총리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과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는 법제정책국에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을 두어 의원입법 검토업무와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법제처는 시시각각으로 발의되는 의원입법안의 내용을 매일 파악하고, 이를 소관부처와 관련 부처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소관부처와 관련부처는 해당 법률안을 실기(失期)하지 않고 검토 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이후 구체적인 집행 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입법 이후 집행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 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의원입법의 증가 현상은 제17대 국회(2004. 5. 30. ~ 2008. 5. 29.) 들어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의원입법 발의건수도 크게 증가하였고,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여 이때부터 국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원입법이 크게 증가한 만큼 집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법안도 많아졌다.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부처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오게 되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정부부처 내에서 확산되었다. 이에 2006. 6. 16.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에서의 심도 있는 사전검토와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협의·조정을 통하여 행정부가 입법정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법제지원단을 신설하였다. 당시 법제지원단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협의기구의 운영,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및 그 밖에 법제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축소방침에 의하여 법제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같은 해 2월 29일 법제지원단이 폐지되고, 의원입법 법제관을 3개 법제국에 분산·배치하는 한편, 의원입법 총괄업무는 기획조정관실 하의 법제총괄담당관실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의원 입법 지원에 있어 총괄업무와 검토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의원입법에 대한 종합적 취합·관리기능이 약화되고, 의원입법 검토업무 또한 정부입법 심사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법제국의 사정상 약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날로 급증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효율적 대처 필요성이 증가하자 법제처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조직으로서 2011. 3. 7. 법제처 내에 법제지원단을 다시 설치하게 되었다. 법제지원단과 함께 그 밑에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지원팀과 검토업무를 담당하는 3개의 법제관실을 신설하였으나, 2012. 8. 13. 내부 조직개편으로 법제지원팀 내 총괄업무를 선임 의원입법 법제관실로 이관하면서 총괄행정법제관/사회문화법제관/경제법제관, 3법제관실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후 2016. 9. 5. 정부의 입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 법제정책국을 신설하면서 의원입법 지원 및 정부 의견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 1·2를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정책총괄과와 함께 법제정책국에 두었다. 2018.3.30. 평가대상조직으로 법제조정 법제관실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2020.2.25. 평가결과 정식조직으로 반영된 바 있다.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조직 연혁

- 2006. 6. 16. 의원입법 지원업무 전담조직으로 “법제지원단” 신설
- 2008. 2. 29. 정부 조직개편으로 법제지원단 폐지, 관련 의원입법 지원업무는 법제총괄담당관실(총괄) 및 3개 법제국(검토)으로 분산
- 2011. 3. 7. 의원입법 지원업무 필요성 증대로 “법제지원단” 재설치
 - 1팀(법제지원팀) 및 3법제관(정치행정·사회문화·경제) 체제
 - 3법제관(총괄행정·사회문화·경제) 체제(2012. 8. 13)
- 2016. 9. 5. 정부입법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법제정책국” 신설
 - 법제조정총괄법제관(총괄 및 행정 분야 검토)
 - 법제조정법제관 1(사회문화 분야 검토)·2(경제 분야 검토)
- 2018. 3. 30. 평가대상 조직으로 “행정법제조정법제관실” 신설
 - 법제조정총괄법제관(총괄 및 국회·법원·선관위 담당)
 - 법제조정법제관 1(행정 분야 검토)·2(경제 분야 검토)·3(사회문화 분야 검토)
- 2020. 2. 25. 평가결과 정식조직으로 “행정법제조정법제관실” 반영



Memo



법제처는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모니터링하여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그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의견서를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의 의원입법 담당 법제관실에서 법률안을 검토할 때 주요 검토사항은 입법 필요성 및 타당성, 헌법 위반 여부, 다른 법률과의 중복·상충 여부, 법 체계상 모순·불합리성 여부, 법 규정의 명확성 여부, 하위법령 위임의 적정성 여부, 부처 간 업무 중복 여부, 국가재정 부담 정도, 조직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기타 부처협의를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발의사실을 법제처로부터 통보받은 소관부처에서는 예산·조직·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상호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조세 감면이나 재정 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지체 없이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부처는 소관부처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부처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소관부처는 관련부처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또한,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인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며, 법제처장은 소관부처에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 소관부처에게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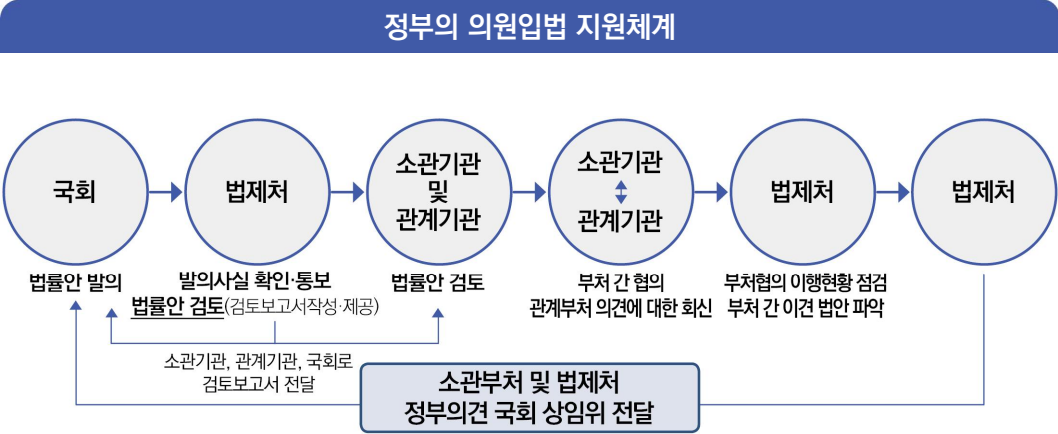
만약 의견협의를 실시한 결과 소관부처와 관련부처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³⁾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의견협의를 요청은 소관부처는 물론이거니와 관련부처도 할 수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게 되면,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⁴⁾를 소집하여 의견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

3)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라 법제처 차장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법령안 주관 기관 및 관계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4)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하여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면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에서는 그 조율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부처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의견조회가 있을 때에는 그 조율된 의견대로 국회에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의견조정 결과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서는 정부 내 의견이 있음을 국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고 있다.

정부의 의원입법 지원업무 절차를 흐름도로 나타내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고, 각 단계별 지원 업무의 구체적 절차 및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3장

입법단계별 의원입법 지원업무 추진절차

1. 법안 발의 단계에서의 의원입법 지원
2.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의원입법 지원
3. 그 밖의 의원입법 지원 업무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법안 발의 단계에서의 의원입법 지원



01 • 의원입법 검토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집 및 제공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의원입법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법안 관련 행사자료, 언론보도자료 등 각종 참고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법제처 내부적으로 법안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주로 수집하는 자료는 ① 국회에서 개최되는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 행사자료 ② 법안과 관련한 언론보도자료 ③ 판례, 학술논문 등 전문자료 등이다.

2011. 3. 7. 법제지원단 신설 이후 수집한 공청회, 세미나 등 행사정보와 언론보도자료 등은 모두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Memo

의원입법 참고자료 수집방법

구 분	내 용	특이 사항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국회활동> 의사일정캘린더	본회의·위원회·국정감사 일정 확인	일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 체크 필요
알림마당> 행사일정캘린더	공청회, 세미나 등 일정 확인	행사의 극히 일부분만 업로드 됨
알림마당> 국회뉴스	주요 정치동향 및 상황 파악	
알림마당> 공지사항	일일주요정치일정, 국회방송주간편성표 등 확인	
정보마당> 정책참고자료실	국회도서관,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정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가능	
국회 입법조사처(www.nars.go.kr)		
주요행사	입법조사처 주최 행사 자료 수집	행사 개최 후 2~3일 후 다운로드 가능
발간물	이슈와 논점 현안보고서 등 입법조사처 발행물 수집	최근 사회적 이슈 관련 쟁점 등 파악 용이
국회예산정책처(www.nabo.go.kr)		
알림&참여> NABO 일정	예산정책처 주최 행사 자료 수집	주최 행사가 많지 않으며 자료집이 늦게 업로드 됨
국회 시스템		
국회방송 (www.natv.go.kr)	국회 홈페이지상 주간편성표 확인 후 주요 행사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 시청	의원실 주관 공청회도 중계하는 경우 있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assembly.webcast.go.kr)	국회 위원회·본회의 진행상황 생중계	소위원회 회의는 중계하지 않음
영상회의록시스템 (www.assembly.go.kr)	청문회/공청회 메뉴에서 위원회 주관 공청회 영상자료 시청 가능	
미디어자료관 (www.assembly.go.kr)	영상자료관> 의원공청회 메뉴에서 의원실 주관 공청회 영상자료 시청 가능	
열린국회정보 (open.assembly.go.kr)	국회 정보공개포털	
기타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주관 공청회 자료 등록	
국회의원별 개별 홈페이지	본인 주관 공청회 자료 등록	
인터넷 검색기능 활용	Google 알리미 서비스 등 활용	

02 • 의원입법 모니터링 및 법안 처리현황 상황보고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국회가 열려 있는 기간에는 주요 법안의 국회 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법안 심사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며, 작성한 보고서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과 공유하고 있다.

03 • 의원입법 발의사실 통보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되면 그 사실을 신속하게 소관 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때 행정부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헌법재판소 소관 법률안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되, 행정부 소관 법률이 아닌 경우에도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등 행정부 내 관계 기관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을 지정하여 통보한다.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⁵⁾과 연동되어 있는 행정부 내 의원입법지원시스템⁶⁾을 통해 의원발의 법률안의 발의 및 회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법률안의 발의 사실과,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법률안의 소관부처로 배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각 부처 법무담당부서에서 의원입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는 법률안을 담당하게 되는 부서(과)를 지정하여 소관 부서(과)에 발의 사실과 관계 기관의 협의 필요 사항 등을 알릴 수 있다. 법률안의 발의사실을 통보받은 소관부처의 법안 담당자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부처협의를 시작한다.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발의 법률안 21,594건 중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법률안 15,055건도 관계부처로 통보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의원입법이 발의되더라도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7년 8월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관련 의원입법 발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5)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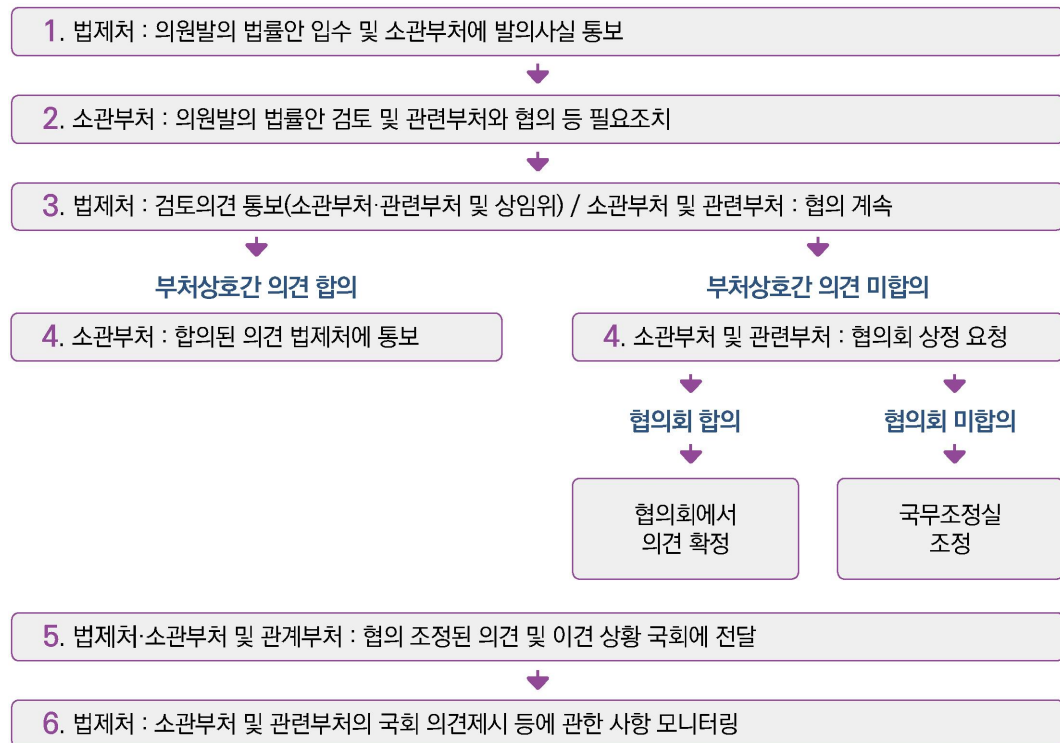
6) 각 부처 업무 내부망에서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로 접속하여 '의원입법 지원' 메뉴 클릭



01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부처협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면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그 법률안이 법리적 쟁점이 있는지,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지, 부처 간 정책 상충 여지는 없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있고,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협의를 실시하여 정부의견을 조율한 후 이를 법제처 및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검토 및 부처협의 처리절차 흐름도



법제처의 검토업무 처리

①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수 및 통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발의 사실을 최대한 신속히 파악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요를 고려하여 실무상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해당 법률안을 입수하면 지체 없이 발의 사실과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신속하게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의 배정

법률안이 발의되면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법제조정총괄법제관·법제조정법제관 1·법제조정법제관 2, 법제조정법제관 3으로 소관 법안을 배정한다.

담당법제관실	담당 기관
총괄	[운영위] 국회 [법사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행안위] 선거관리위원회
행정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사위]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안위]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경찰청 [교육위] 교육부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여가위] 여성가족부 [외통위] 외교부, 통일부 [국방위]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보위] 국가정보원 [과기정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제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토위] 국토교통부, [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사회문화	[환노위]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복지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12월 기준

③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보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안에 대한 심층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이 때 소관부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제2항^가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⁸⁾). 임시국회나 정기국회가 개최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검토업무 외에 주요 쟁점법안을 별도로 파악하여 기획검토를 병행하기도 한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 법안을 검토할 때에는 헌법 합치 여부, 법률 간 모순·저촉 여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지 여부, 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정부조직의 확대 또는 인력의 증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되며, 그 검토기준에 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2014년도까지는 예산·조직·규제 등에 관련된 관계부처에 해당조문과 그 내용을 특정하여 통보하는 형태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처에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의원입법의 발의 건수가 현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발의 건수에 비례하여 검토 인력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리적 쟁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높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 등 검토 대상을 선별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7년도부터는 의원입법지원시스템 및 공문을 통한 검토의견서 제공 이외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검토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묻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 법안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에는 법률안의 입법형식(제정안·개정안) 및 법률안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장 결재, 법제정책국장 전결, 법제관 전결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또한, 국정과제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쟁점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사항 체크리스트에 따라 확인하고,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당장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를 법제관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④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 대한 법제처 검토의견 통보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법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게 되면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검토 의견을 해당 법안의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 통보하는데, 소관부처와 관련부처가 편리하게

7)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8) 제4조(적용대상법률안의 검토 및 의견통보) ④ 법제처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적용대상 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부처에 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검토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온나라 시스템(공문)을 통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관부처와 관련부처에 통보한 검토의견 중에 국가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무조정실에도 검토의견을 함께 통보한다.

관련부처의 예

필요적 부처협의 사항 및 관계 부처

필요적 부처협의 사항	관계 부처
규제 신설·강화	해당 부처 국무조정실
조세감면, 재정지출 증가, 공공기관(출자출연, 조직, 인사), 국유재산 특례	기획재정부
조직(위원회)의 신설·폐지·변경, 서식의 신설·변경 지방자치, 지방세, 국유재산 특례	행정안전부
정원 증가, 공무원 인사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쟁제한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양성평등 관련 중요사항	여성가족부
벌칙, 질서위반행위벌	법무부
법령상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부처

소관부처의 검토업무 처리

① 법률안 검토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발의사실 또는 검토의견을 법제처로부터 통보받은 소관부처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그 법안 담당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률안 담당부서가 법률안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되, 그 법률안에 둘 이상의 담당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가 총괄하여 처리하며, 법률안 담당부서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 또는 기관장이 지정한 담당부서가 처리한다.

② 관련부처 의견조회

소관부처 법무담당부서로부터 법안에 대한 발의사실을 통보받은 법안 담당부서는 즉시 법안을 검토하고, 관련부처를 파악하여 공문으로 부처 간 의견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관부처(법안 담당부서)는 예산·조직·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을 의무가 있고, 관계부처의 장은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11의2]. 그리고 법제처장은 다른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부처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에게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에서 소관부처에 통보한 관계부처에만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협의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관부처의 판단 하에 실제 법안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처에도 의견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관부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검토 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는 온나라 공문을 통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때에 법제처도 수신처로 지정하여 함께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에서는 부처 간 이견 여부를 파악¹⁰⁾하게 된다.

한편, 법안의 내용상 재정지원을 강화하거나 조직을 확대하는 등 소관부처에 유리한 경우 암묵적으로 동조하여 부처협의를 국회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관련부처는 소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부처협의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소관부처에 대하여 의견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는 관련부처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9)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② 영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상호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3.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4. 조직의 신설·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
5.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6. 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0)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④ 법제처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이견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 공문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치

1. 관련 :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96호)
2.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2020.3.9(월)까지 불임 2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법률안 >

의안번호	대표발의 의원	발의일자	주요내용
24615	주승용 의원	2020.2.14.	○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신설)

- 불임 1. (24615 주승용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산업통상자원부

수신자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환경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제청장, 통일부장관, 관세청장, 경찰청장, 병무청장, 산림청장, 조달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통계청장, 농촌진흥청장, 새만금개발청장,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주무관 공업사무관 과장 전결 2020. 2. 27.
협조자
시행 입지총괄과-433 접수 법제조정총괄법제과-680 (2020. 2. 27.)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4435 팩스번호 044-203-4739 / actjhc@motie.go.kr / 비공개(5)

제 3 장

입법단계별 의원입법
지원업무 추진절차

③ 관련부처와 의견협의 및 의견조정

소관부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발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부처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부처 상호간 자율적 의견협의를 안될 경우에는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¹¹⁾

④ 정부의견의 확정 및 국회 제출

소관부처에서 부처협의를 실시한 결과 이견이 없거나 이견이 해소되어 합의된 경우 그 결과를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과 관련부처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등재하며, 국회에도 합의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부처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부처 간 이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처 간 협의로 의견조정이 안되면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면 소관부처는 그 조정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정부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와 관련부처 모두 정부 내 이견이 있음을 반드시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부처의 검토업무 처리

① 법률안 검토

소관부처로부터 공문을 통하여 의견조회 요청을 받거나 법제처로부터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관련부처의 법무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률안 담당부서가 법률안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되, 그 법률안에 둘 이상의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가 총괄하여 처리하며, 법률안 담당부서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 또는 기관장이 지정한 담당부서가 처리한다.

11)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의견조정 절차에 관하여는 59페이지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② 소관부처와 협의 및 의견조정

법률안을 검토한 후 관련부처는 소관부처에 그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의견협의를 통하여 부처 상호 간 의견을 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소관부처에서 부처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소관부처가 의견협의를 소극적이거나 부처 상호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의견의 확정: 정부의견의 국회 제출

부처 간 협의로 정부의견이 확정되거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면 일차적으로 소관부처가 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관련부처도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 그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와 관련부처 모두 정부 내 이견이 있음을 반드시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Memo

관련 규정

관련 분야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협의	▪ 통보받은 소관부처의 장은 예산·조직·규제 등 부처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10일 이상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11조의2제2항) ▪ 관계부처의 장은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가능(제11조의2제3항) ▪ 소관부처의 장은 관계부처의 검토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함(제11조의2제3항) ▪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국회의 심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제11조의2제4항) ▪ 법제처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법리적 보완사항을 소관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요청 시 적절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함(제11조의2제5항).	▪ 소관부처의 장은 다음의 경우 10일 이상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8조의2제2항). 1. 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상호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3.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4. 조직의 신설·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 5.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6. 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관부처의 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8조의2제3항). ▪ 소관부처의 장은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제8조의2제4항). ▪ 법제처장은 소관부처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듣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에게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8조의2제5항)

02 •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의견조정

법률안에 대하여 법리적·정책적으로 소관부처와 관련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견을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종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와 관련부처 간에 자율적인 협의 결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협의·조정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두고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상설기구는 아니며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할 때 소집된다.

근거 및 역할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업무 운영규정」¹²⁾에 따라 법제처에 설치된 협의·조정기구로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부처 간 이견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부처 간 협의를 지원하고 객관적·법리적 견지에서 조정을 실시하여 정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소관 부처로 하여금 이러한 정부의 조율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성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¹³⁾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 기관 및 관계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의 차장이 된다.

실무협의회의 경우 법령안 주관 기관,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 기관, 관계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통상 정부부처 과장급으로 운영된다.

12)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제11조의3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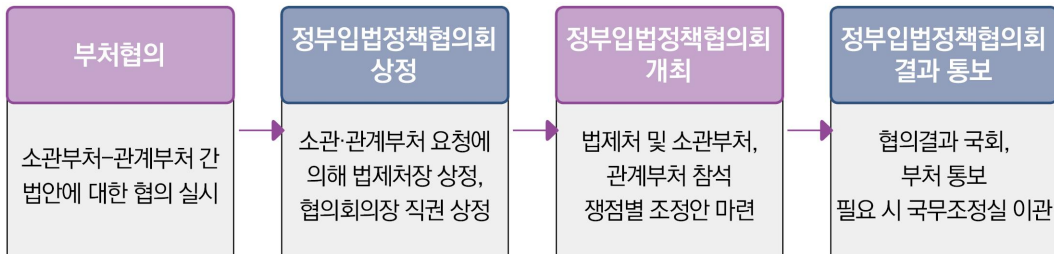
⑥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3) 법제처의 경우에는 법제정책국장을 말한다.

주요 심의사항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i)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ii)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iii)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iv)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 및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¹⁴⁾ 등).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흐름도



1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2.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가 발생한 사항
4.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의 협의사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협의
2. 적용대상법률안에 조세감면의 필요, 재정지출의 증가,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그 밖에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대응방안 협의
3. 의원발의법률안의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소관부처 협의
4. 그 밖에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한 협의

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요청

①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신청서” 양식에 협의 필요사항 등을 기재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는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전에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와 비교하여 의장 및 참석자의 직급만 다를 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신청서 서식은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질의답변/FAQ > FAQ”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법안의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는 이 신청서를 첨부해서 법제처에 공문으로 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에 관한 공문 등의 관리는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 담당하고,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은 협의회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담당 법제조정법제관실에 협의회 소집 요청 사실을 알려 협의회 개최 준비를 하도록 한다.

② 법제처장이 협의회를 직권으로 소집하는 경우

법제처장은 법리적 쟁점 유무 여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에 관한 법제처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처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 또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제3호).

③ 협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의장(법제처 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제4호).

부처협의 우회 목적으로 의원입법이 발의되거나 법안의 내용이 부처에 유리한 경우 부처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정 결과를 우려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신청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법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회를 소집하여 정부의견을 신속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안건 검토

부처로부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을 받으면, 법제처의 담당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협의회 상정 안건을 검토한다. 이 때 안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것인지,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나,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실무협의회를 우선적으로 거치게 된다.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와 협의회 개최일정을 협의하고, 상정 안건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의 공식의견을 모두 미리 받아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 내부 의견을 정리한 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경우 처장·차장에게, 실무협의회는 실무법제정책국장에게 보고한다.

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계획 통보

협의회 일정과 참석자가 확정되고, 상정 안건에 대한 내부 보고가 완료되면 법제처 법제조정 총괄법제관실에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계획¹⁵⁾을 첨부한 협의회 개최 공문을 부처로 통보한다. 이 때 실무협의회가 아닌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처 및 관련 부처 외에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같이 통보하여 각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국장급)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실무협의회는 경우에도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외에 법제처,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의 소속 공무원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분석, 이견에 대한 각 부처 의견,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회 개최 일정이 확정되면 협의회 개최 계획을 공문으로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에 보내고, 의원 입법지원시스템의 “법제처 현황·관리 > 협의회”에 개최계획을 등록하여 법안의 관계 부처가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서도 협의회 개최일정 및 상대 부처의 의견을 확인하고, 시스템 상의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15) 협의회 개최계획에는 회의 일시 장소 등 기본정보 뿐 아니라, 법안의 심의경과, 주요내용, 쟁점 및 쟁점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한다.

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협의결과 처리

① 협의회 결과 부처 통보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 후 그 협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도 그 협의된 결과를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관련부처도 국회에서 의견조회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 결과대로 국회에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회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안건, 협의회 개최계획, 협의회 결과 등 관련 자료들을 모두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협의회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② 국무조정실 조정 의뢰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의 요청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견조정이 잘 안 되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법제처장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 조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제5항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제4호).

③ 고위당정협의회 및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장은 정부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위당정협의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입법추진상황 및 정부대응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¹⁶⁾.

16)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고위당정협의회 회의 보고) 법제처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입법 반영을 위하여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용대상법률안의 입법추진상황 및 정부대응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요청 공문 예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
(경유)

제목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요청

1. 관 련 :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6436(2020.9.22.)호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 제1항
2. 상기 대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며, 불임의 신청서와 세부검토의견 및 법률안 의안 원문을 제출합니다.

- 붙임 1.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신청서.
2. 세부검토의견.
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무관

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결 2020. 9. 28.
관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법무담당관-8518

접수 법제조정총괄법제관-6691 (2020. 9. 28.)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
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1529 팩스번호 043-719-1500 / choifood@korea.kr / 비공개(5)

힘내라 대한민국!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신청서

신청부처:

법령안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주요 쟁점사항	○ (협의를 필요한 사항을 기재)		
협의 필요사항	신청부처 검토의견	○	
		※ 세부검토의견 : 별첨	
		신청부처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관련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	
		※ 세부검토의견 : 별첨	
		관련부처(소관부처)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개최 통보 공문 예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 제 처

정부혁신
보다 나은 법제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제조정법제관-317(2020. 2. 19.)호 관련입니다.
3. 우리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이견 해소 및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 등을 위하여 정부입법정책(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의안번호 23422)에 대하여 부처 간 의견 수렴 및 이견 해소를 위하여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0. 3. 26.(목) 14:00 ~ 16:00
- 장 소 : 법제처 해석회의실(정부세종청사 7-1동 722호)
- 회의주재 :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 참 석 자 : 외교부 재외동포과장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동포담당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장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붙임 1. 재외동포기본법안(의안번호 23422). 끝.

법 제 처 장

수신자 외교부장관(재외동포과장),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문화과장), 교육부장관(재외동포교육담당관)

행정사무관

법제조정법제 전결 2020.2.28.
관

협조사

시행 법제조정법제관-358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어진동) / www.moleg.go.kr

전화번호 044-200-6809 팩스번호 044-200-6958 / iron2kim@moleg.go.kr / 비공개(5)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기로"(moleg.go.kr/herelaw)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협의 결과 통보 공문 예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 제 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결과 송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2조의2
3.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688호)에 대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결과를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결과 1부. 끝.

법 제 처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진방재정책과장), 교육부장관(교육시설과장)

주무관 법제조정법제관 법제정책국 법전결 2019. 12. 31.
관 제정책국장

협조자

시행 법제조정법제관-5146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어진동) / www.moleg.go.kr

전화번호 044-200-6810 팩스번호 044-200-6810 / jjeong@moleg.go.kr / 비공개(5)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기로"(moleg.go.kr/herelaw)

제 3 장

입법단계별 의원입법
지원업무 추진절차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법 제 처



수신 국무조정실장(안전환경정책관)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이견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심의 중인 「소방기본법」 (의안번호 제2018660호, 김민기의원 등 11인)에 대해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간 의견 협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부처 간 이견이 있음을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소방청 의견 1부.
3. 기획재정부 의견 1부. 끝.

법 제 처 장

주무관 법제조정법제관 법제정책국장 전결 2019. 6. 18.
협조자
시행 법제조정법제관-2500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7-1동 법제처 (어진동) / www.moleg.go.kr
전화번호 044-200-6810 팩스번호 044-200-6810 / jjjong@moleg.go.kr / 비공개(5)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기로"(moleg.go.kr/herelaw)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실적

법제처는 의원입법 지원업무를 시작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포함)를 총 293회 개최하여 562건의 안건을 협의·조정하였다.

의원입법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실적

연 도	협의회 개최 횟수	협의회 안건 수
2006년	10회	11건
2007년	36회	51건
2008년	9회	9건1
2009년	16회	17건
2010년	17회	51건
2011년	21회	31건
2012년	16회	19건
2013년	24회	40건
2014년	20회	27건
2015년	19회	28건
2016년	21회	32건
2017년	20회	37건
2018년	12회	51건
2019년	20회	61건
2020년	32회	97건
합 계	293회	562건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개최 목록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의 결과
2006년			
제1회	06.09.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책협의회 상정
제2회	06.09.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협의 완료
제3회	06.08.30.	총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4회	06.08.30.	빗물 등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5회	06.11.0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협의 완료
제6회	06.11.10.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책협의회 상정
제7회	06.11.21.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8회	06.12.07.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	협의회 재상정
제9회	06.12.1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협의 완료
제10회	06.12.26.	공인노무사법	협의 완료
2007년			
제1회	07.01.18.	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실 이관
제2회	07.01.25.	출판 및 인쇄진흥법	협의 완료
제3회	07.02.14.	국립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책협의회 상정
제4회	07.02.27.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5회	07.03.13.	건설산업기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협의 완료
제6회	07.03.15.	요인경호법안	국무총리실 이관
제7회	07.03.23.	소방공무원법	정책협의회 상정
제8회	07.03.27.	국립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9회	07.03.28.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책협의회 상정
제10회	07.04.10.	소방공무원법	협의 완료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의 결과
제11회	07.04.27.	산업디자인진흥법	정책협의회 상정
제12회	07.05.01.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13회	07.05.08.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14회	07.05.10.	연안권발전 특별법안	정책협의회 상정
제15회	07.05.10.	산업디자인진흥법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16회	07.05.21.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책협의회 상정
제17회	07.05.25.	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협의 완료
제18회	07.05.31.	정신보건법	협의 완료
제19회	07.06.07.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20회	07.06.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협의 완료
제21회	07.06.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협의 완료
제22회	07.06.27.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	협의 완료
제23회	07.07.05.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이관
제24회	07.07.05.	전시산업발전법안	협의 완료
제25회	07.07.19.	병역법	국무총리실 이관
제26회	07.07.26.	건축기본법안 건축문화진흥법안	협의 완료
제27회	07.07.30.	산업디자인진흥법	협의 완료
제28회	07.09.0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협의 완료
제29회	07.09.06.	지방교부세법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 연안권발전 특별법안	협의 완료
제30회	07.09.13.	산업디자인진흥법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협의 완료
제31회	07.09.20.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32회	07.10.11.	군인복지기본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협의 완료
제33회	07.10.25.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	협의 완료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약 결과
제34회	07.11.08.	병역법	협약 완료
제35회	07.11.14.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	협약 완료
제36회	07.12.20.	환경정책기본법	협약 완료
2008년			
제1회	08.05.06.	농산물품질관리법	협약 완료
제2회	08.10.1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완료
제3회	08.10.2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완료
제4회	08.10.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완료
제5회	08.10.3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완료
제6회	08.10.3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정책협의회 상정
제7회	08.11.1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완료
제8회	08.11.1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협약 완료
제9회	08.12.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완료
2009년			
제1회	09.02.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완료
제2회	09.02.1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	협약 완료
제3회	09.03.19.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완료
제4회	09.04.10.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	추후 논의
제5회	09.04.2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협의회 상정
제6회	09.04.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완료
제7회	09.05.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완료
제8회	09.05.13.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완료
제9회	09.05.13.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후 논의
제10회	09.05.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	협약 완료
제11회	09.06.11.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실 이관
제12회	09.07.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협약
제13회	09.09.2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완료
제14회	09.10.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완료
제15회	09.11.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실 이관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 의 결 과
제16회	09.12.0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협 의 완 료
2010년			
제1회	10.04.20.	수난구호법	국무총리실 이관
제2회	10.04.2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협 의 완 료
제3회	10.04.30.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협 의 완 료
제4회	10.05.28.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국무총리실 이관
제5회	10.07.2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협 의 완 료
제6회	10.07.28.	법학전문대학원의 법관·검사 및 일반직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안	철회
제7회	10.09.17.	지방세법 등 3건	국무총리실 이관
제8회	10.10.28.	한국가스공사법 등 27건	협 의 완 료
제9회	10.11.09.	지하수법	협 의 완 료
제10회	10.11.25.	지방세법	국무총리실 이관
제11회	10.11.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 의 완 료
제12회	10.11.2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7건	협 의 완 료
제13회	10.12.01.	청소년보호법	추가 논의
제14회	10.12.05.	청소년보호법	협 의 완 료
제15회	10.12.08.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실 이관
제16회	10.12.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협 의 완 료
제17회	10.12.3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협 의 완 료
2011년			
제1회	11.03.2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협 의 완 료
제2회	11.04.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협 의 완 료
제3회	11.04.0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5건	협 의 완 료
제4회	11.04.13.	지방문화원진흥법	협 의 완 료
제5회	11.04.27.	지하수법	협 의 완 료
제6회	11.06.09.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협 의 완 료
제7회	11.06.13.	청소년보호법	협 의 완 료
제8회	11.06.21.	예술인복지법안 등 4건	협 의 완 료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 의 결 과
제9회	11.07.22.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실 이관
		경찰관직무집행법	협 의 완 료
제10회	11.07.29.	하수도법	협 의 완 료
제11회	11.08.24.	해양환경관리법	국무총리실이관
제12회	11.09.08.	도로법	정책협의회 상정
제13회	11.09.09.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3건	협 의 완 료
		정보교육진흥법안	협 의 완 료
제14회	11.09.29.	낙시관리 및 육성법	협 의 완 료
제15회	11.10.20.	도로법	협 의 완 료
제16회	11.11.1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협 의 완 료
제17회	11.11.29.	축산물위생관리법	협 의 완 료
제18회	11.11.29.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협 의 완 료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협 의 완 료
제19회	11.12.08.	콘텐츠산업 진흥법	협 의 완 료
2012년			
제1회	12.01.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협 의 완 료
제2회	12.01.31.	국가정보화기본법	협 의 완 료
제3회	12.02.0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협 의 완 료
제4회	12.02.2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협 의 완 료
제5회	12.02.2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협 의 완 료
제6회	12.04.05.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	협 의 완 료
제7회	12.09.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윤상현 의원안)	협 의 완 료
제8회	12.09.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승조 의원안)	협 의 완 료
제9회	12.09.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우택 의원안)	협 의 완 료
2013년			
제1회	13.03.1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협 의 완 료
제2회	13.04.30.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마련
제3회	13.05.1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법제처 수정안 마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의 결과
제4회	13.05.23.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국무조정실 이관
제5회	13.05.2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이관
제6회	13.05.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마련
제7회	13.05.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이관
제8회	13.06.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국무조정실 이관
제9회	13.06.19.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협의 중
제10회	13.07.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11회	13.07.24.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	부처 협의 중
제12회	13.08.2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협의 중
제13회	13.08.2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마련
제14회	13.08.27.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마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회	13.08.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이관
제16회	13.09.06.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안	부처 협의 중
제17회	13.09.12.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 마련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18회	13.10.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협의 중
제19회	13.10.1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외 9건	부처 협의 중
제20회	13.10.16.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마련
제21회	13.10.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협의 중
제22회	13.11.0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부처 협의 중
제23회	13.11.28.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협의 중
제24회	13.11.28.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처 협의 중
2014년			
제1회	14.01.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협의 완료
제2회	14.01.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가 논의
제3회	14.02.27.	한국수어법안	추가 논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 의 결 과
제4회	14.03.06.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	국무조정실 이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	
제5회	14.04.0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협의 미완료
제6회	14.05.01.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추가 논의
제7회	14.06.19.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추가 논의
제8회	14.07.1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9회	14.07.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10회	14.07.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11회	14.08.18.	생활체육진흥법안	협의 완료
제12회	14.08.19.	한국수어법안	협의 완료
제13회	14.09.23.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가 논의
제14회	14.10.02.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협의 완료
제15회	14.10.06.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	추가 논의
제16회	14.10.31.	나눔기본법안	협의 완료
제17회	14.11.1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안	협의 완료
제18회	14.11.2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제19회	14.11.25.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추가 논의
제20회	14.12.0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완료
2015년			
제1회	15.01.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등 2건	조정안 수용
제2회	15.01.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정안 수용
제3회	15.02.25.	지하수법 개정안	조정안 수용
제4회	15.03.19.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정안 수용
제5회	15.04.1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4건	협의결과 수용
제6회	15.04.23.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	협의결과 수용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의 결과
제7회	15.05.19.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정안 불수용
제8회	15.06.03.	농어업인력지원법안	협의결과 (일부)수용
		농어업인력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9회	15.07.0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조정안 수용
제10회	15.09.17.	결핵예방법 개정안	조정안 수용
제11회	15.09.2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협의결과 불수용
제12회	15.09.2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협의결과 (일부)수용
제13회	15.10.0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협의결과 불수용
제14회	15.10.23.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협의결과 불수용
제15회	15.10.2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협의결과 수용
제16회	15.11.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협의결과 수용
제17회	15.11.10.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협의결과 불수용
제18회	15.11.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정안 수용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제19회	15.12.28.	유아교육법 개정안	조정안 수용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016년			
제1회	16.03.10.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회	16.08.04.	통일교육 지원법안	이견조정
제3회	16.08.08.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견 미조정
제4회	16.08.0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이견조정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제5회	16.08.11.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안	이견조정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의 결과
제6회	16.08.30.	징벌적 배상법안	정부의견 통일 필요성에 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제7회	16.10.06.	화장품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8회	16.10.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9회	16.10.1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 미조정
제10회	16.10.2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11회	16.10.21.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12회	16.10.25.	대학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제13회	16.10.26.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14회	16.10.2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제15회	16.11.03.	항공안전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16회	16.11.04.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법안	이견조정
제17회	16.11.0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 미조정
		학교보건법 개정안	
제18회	16.12.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제19회	16.12.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이견 미조정
제20회	16.12.1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21회	16.12.15.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이견조정
2017년			
제1회	17.01.16.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제2회	17.01.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의견 통일 필요성에 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의 결과
제3회	17.02.16.	환경보건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4회	17.02.16.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제5회	17.02.28.	환경보건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6회	17.04.06.	은행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7회	17.04.0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제8회	17.05.31.	항공안전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9회	17.07.12.	항공사업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10회	17.07.1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견 통일 필요성에 합의
제11회	17.07.19.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제12회	17.09.05.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제13회	17.09.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14회	17.09.14.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견 미조정
제15회	17.07.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 미조정
제16회	17.10.12.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17회	17.10.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 미조정
제18회	17.11.07.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 미조정
제19회	17.11.1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식품위생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 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제20회	17.12.13.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의 결과
2018년			
제1회	18.3.2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회	18.5.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3회	18.7.26.	항공보안법 개정안	이견조정
		철도안전법 개정안	이견조정
		아동복지법 개정안	이견조정
		노인복지법 개정안	이견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이견조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이견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이견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제4회	18.8.30.	관광진흥법 개정안	이견조정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이견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견조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이견조정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	이견조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이견조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행정사법 개정안	이견조정
		산림보호법 개정안	이견조정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이견조정
		소방기본법 개정안	이견조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견조정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견조정
		경비업법개정안	이견조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의 결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이견조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이견조정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이견조정
		교통안전법 개정안	이견조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견조정
		건축사법 개정안	이견조정
		철도안전법 개정안	이견조정
		도선법 개정안	이견조정
		축산법 개정안	이견조정
		관세사법 개정안	이견조정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이견조정
		세무사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5회	18.10.5.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견 미조정
제6회	18.1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7회	18.11.0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 미조정
제8회	18.11.13.	소방기본법 개정안	이견 미조정
제9회	18.11.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 미조정
제10회	18.11.22.	우편법 개정안	이견 미조정
제11회	18.12.10.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이견 미조정
제12회	18.12.1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이견조정
2019년			
제1회	19.1.23.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2회	19.2.12.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18157)	이견조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18318)	이견조정
제3회	19.3.27.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18157)	이견조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18318)	이견조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18152)	이견조정
제4회	19.3.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제5회	19.4.8.	해운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6회	19.6.13.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이견조정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의 결과
제7회	19.6.18.	소방기본법 개정안	이견 미조정
제8회	19.6.2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9회	19.7.10.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10회	19.7.1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이견조정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이견조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이견조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이견조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견조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제11회	19.8.1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제12회	19.8.13.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13회	19.8.23.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19764)	이견조정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20023)	이견조정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20392)	이견조정
제14회	19.8.26.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15회	19.9.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견조정
제16회	19.9.27.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19764)	이견조정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20023)	이견조정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20392)	이견조정
제17회	19.9.2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이견조정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견 미조정
제18회	19.10.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6836)	이견 미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17923)	이견 미조정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의 결과
		노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이견조정
		혈액관리법 개정안	이견조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이견조정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이견조정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공공관리기본법안	이견조정
		갈등기본법안	이견조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견 미조정
		의료법 개정안	이견조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견 미조정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제19회	19.11.20.	골재채취법 개정안	이견조정
제20회	19.12.1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이견조정
2020년			
제1회	20.1.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의 결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	이견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이견조정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회	20.2.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3회	20.2.2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4회	20.3.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이견조정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평화경제기본법안	이견조정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이견조정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의 결과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이견조정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만성콩팥병관리법안	이견조정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이견조정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이견조정
제5회	20.4.16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견조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6회	20.8.26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제7회	20.9.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803)	이견조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3618)	이견조정
제8회	20.9.2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의 결과
제9회	20.9.2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 미조정
제10회	20.9.24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	이견 미조정
제11회	20.10.21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
제12회	20.10.2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13회	20.10.23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견 미조정
		기초학력 보장법안(670)	이견 미조정
		기초학력 보장법안(678)	이견 미조정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이견 미조정
제14회	20.10.26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15회	20.10.26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제16회	20.10.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이견조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일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일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일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견조정(일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일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일부)
제17회	20.10.30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제18회	20.11.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제19회	20.11.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제20회	20.11.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1회	20.11.18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별법	이견 미조정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견 미조정

개최회수	개최일	법 안 명	협의 결과
제22회	20.11.20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견조정
제23회	20.11.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4회	20.11.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5회	20.11.27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견조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6회	20.11.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7회	20.11.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견조정
제28회	20.12.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견 미조정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이견조정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이견조정
제29회	20.12.7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견조정
제30회	20.12.1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이견조정
제31회	20.12.31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협의 진행 중)
제32회	20.12.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진행 중)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쟁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담당하는 교원을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로 정의할 수 있는지, ② 교육청이 청소년단체 육성·활동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부처 간 이견 내용

- 여성가족부(찬성)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의 근거, 업무과중에 따른 보상 근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대한 시책 마련 책무 부과 필요
- 교육부, 기획재정부(신중검토)
민간단체 활동 지도 행위를 교원의 법적 임무로 보기 곤란한 점, 민간단체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에 국가 개입은 부적절, 다른 교육활동 지도교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 가능하므로 신중 검토 필요

협의 결과

- (쟁점 1)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를 정의 규정에 두게 되면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가 따로 창설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 제29조제2항에서만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의 규정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를 삭제하고 제29조제2항에 직접 규정하는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합의
- (쟁점 2·3)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6.13.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참석 후 이견이 있는 관련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였으나 의견 조정이 어렵다고 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통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명령권(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권 포함)을 소방서장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 ① 소방서장의 일시정지 명령권 신설 필요성, ② 소방서장의 일시정지 명령권 행사 범위, ③ 소방서장의 과태료 부과권 인정 여부

부처 간 이견 내용

- 해양경찰청(반대)
소방청장의 일시정지 명령권을 발할 수 있는 경우를 내수면에 한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면 수용 가능하나, 수상레저 안전관리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
- 소방청(일부 찬성)
소방서장이 일시정지를 명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 예상

협의 결과

- ① 소방서장의 일시정지 명령권 신설 필요성
수상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소방서장의 일시정지 명령권 신설 필요성과 관련한 국회논의 과정에서 그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해 보완 필요
- ② 소방서장의 일시정지 명령권 행사 범위
다른 법률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 소방서장의 일시정지 명령권은 내수면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명령권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령권행사 요건을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
- ③ 소방서장의 과태료 부과권 인정 여부
과태료는 현행대로 내수면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방서장에게 일시정지 명령권이 부여되고, 그 실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태료 부과권도 같이 부여한다면, 일시정지 명령권에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

국회 심의 반영 여부

- 국회 심의 중(협의 결과가 위원회안(대안)에 반영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때부터 해당 폐기물의 최종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련의 처리과정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확인·조치할 의무 부여

쟁점

- 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때부터 해당 폐기물의 최종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련의 처리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처리기준과 방법, 재활용원칙 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부처 간 이견 내용

- 환경부: 수용
폐기물이 법령 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 처리업자 간의 결탁 관계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 뿐 아니라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확대가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 신중검토 필요
위탁한 때부터 폐기물의 최종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련의 처리 과정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업계에 과도한 책임부과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업체의 시설, 공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처리과정이 적합한지 여부 판단 곤란함

협의 결과

- 음식물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확인·조치 의무
폐기물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배출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문구가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 과정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도록 하는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배출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 배출자가 준수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책임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협의안과 같이 수정하되, 향후 하위법령을 만들 때에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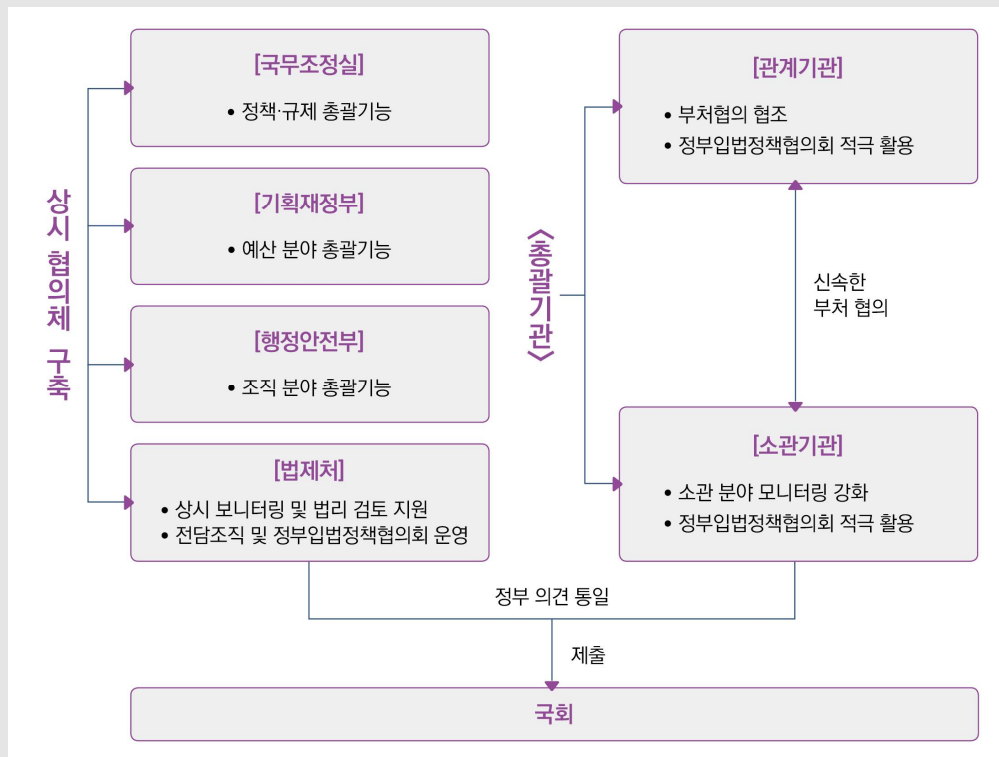
국회 심의 반영 여부

- 협의 결과 반영되어 국회 통과됨

총괄기관 협의체를 통한 지원

법제처는 임시·정기국회 개최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지원업무 외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 중 과도하게 예산이 수반되어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정부정책과 크게 배치되는 주요 쟁점법안을 별도로 파악하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법제처 등으로 구성된 총괄기관 회의를 통해 쟁점법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여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원입법 지원을 위한 총괄기관 협의체 운영체계



국·공유재산 특례 관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국유·공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으며, 5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함

쟁점

- 상생법인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50년 임대, 50년 범위에서 갱신)의 적절성

부처 간 이견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추가협의 필요
특례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의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선정을 통해 특례 대상이 특정 가능하므로 해당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행안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를 활용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이 동 시행령에 따른 일자리창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고, 해당 조항에 따른 특례내용도 국유재산에 적용되는 내용(장기임대 최대 50년, 수익계약 허용, 임대료 감경 등)과 달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 반대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통해 상생법인에 대한 패키지 지원방안으로 국유재산의 장기임대 기간을 10년 이상, 최대 50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므로,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으로 한정할 필요
- 행정안전부: 반대
그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16~'18)을 통해 일자리창출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해 공유재산 활용 특례를 아래와 같이 기 마련하였으므로, 본 개정법률안의 대부분 상생법인의 경우도 공유재산법령을 적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협의 결과

- 협의회 결과가 반영되어 국회 통과함
- 조문의 구조상으로는 상생법인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특례의 대상과 목적이 특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서 상생법인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갱신기간도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해당 상생법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므로,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의 범위 이내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행정기관 위원회 관련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쟁점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부처 간 이견 내용

- 보건복지부: 수용
혈액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생 헌혈(교육부), 군(예비군 포함) 헌혈(국방부), 공공기관 헌혈 장려(기재부) 등 범부처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나, 관련 부처별로 접촉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
* 헌혈추진협의회(혈액관리법 제4조의4) : 지역사회 단위로 헌혈홍보 등을 위해 구성·운영
혈액관리위원회(혈액관리법 제5조)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민간전문가, 담당부처(복지부, 질본, 식약처) 중심으로 구성되어 범부처적 정책 조정 및 마련에 한계
- 행정안전부: 반대
현재 혈액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혈액관리법」제5조에 따라 혈액관리 위원회를 두고, 既 설치된 위원회를 통해(예 : 전문·분과위원회 활용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동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자체 장이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협의 결과

- 개정안은 마치 협의회가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그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만약 협의회를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그에 맞추어 개정안 제4조의2제2항*의 수정 필요

03 •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처리

법제처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법리적 쟁점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의견이 정리된 법안인 경우에는 협의회 결과 등 조율된 정부입장을 전달하도록 한다. 그리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회에 통보한다.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

소관부처(관련부처)가 국회 상임위원회 등으로부터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각 부처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 후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부처 상호간 이견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요청한 기간에 합의된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처 간 이견이 있음과 추후 부처 간 의견협의를 거쳐 조율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부처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검토의견을 법제처장, 기획재정부장관(정부재정과 관련한 내용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부조직과 관련한 내용인 경우)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견제시 요청(의안번호 제17246호, 제17384호)

첨부된 법률안과 같이 이른바 ‘유리천장위원회’와 같은 여성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불임 법률에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귀 부처의 의견을 11. 26(화) 17: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영찬 입법조사관 (02-788-2183)

- 불임 1.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 향안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부. 끝.

법 제 사 법 위 원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법제처장(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주무관	입법조사관(1급)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결 2019. 11. 25.
협조자				
시행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실-3286	(2019. 11. 25.)	접수 기획재정담당관-1452	(2019. 11. 26.)
우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416호	/ legislation.assembly.go.kr/	
전화번호	2183	팩스번호 02)788-3573	/ hbkssh@assembly.go.kr / 대국민 공개	

법제처 검토의견의 국회 통보 예시

저장 : 박송이 / 법제조정총괄법제관 (2020-06-15 13:58:42)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 제 처



수신 법제사법위원장
(경유)

제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의안번호 제17246, 제17384호)

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3286과 관련됩니다.
2. 귀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불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법제처 검토의견서(1/246, 국립해양박물관).
2. ★법제처 검토의견서(17384, 항만공사법). 끝.

법 제 처 장

행정사무관	법제조정법제관	법제정책국 법전결 2019.12.2. 제정책국장
협조자		
시행 법제조정법제관-4875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어진동)	/	www.moleg.go.kr
전화번호 044-200 -6807 팩스번호 044-200 -6807	/ dike@moleg.go.kr	/ 비공개(5)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기로"(moleg.go.kr/herelaw)

문서관리카드법제조정법제관-4875 1 - 1

[붙임]

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한 법제처 의견

법안의 개정 경과

- 2018. 12. 6. 황주홍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유리천장위원회” 관련 법안 대표발의
2019. 11. 20.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안의 주요내용

- 수도권, 광역시(군지역 제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 등록 제도를 도입함(안 제3조 및 제4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등록된 개별 주택마다 해당 연도의 공정임대료(보증금, 차임 등)를 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되, 공정임대료를 결정할 때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종전 보증금과 차임,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7조)
- 공정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 등을 약정한 계약은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공정임대료를 초과하여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한 임차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법안에 대한 법제처 의견

① 법안 개관

- 이 법안 제4조, 제7조 및 제10조는 최근 저금리 기초의 장기화 등으로 폭등하고 있는 전세 가격과 전세의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위협받고 있는 서민의 주거와 가계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임대료 등록제도와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하 생략)



01 • 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자 연찬회 개최

목적

법제처는 중앙부처 의원입법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원입법 지원업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정부입법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부처 간 업무에 대한 의견교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연찬회를 개최한다.

내용

의원입법 연찬회는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에 1일~2일로 실시¹⁷⁾하며, 매년 평균 중앙부처 의원입법 업무 담당자(각 부처 법무담당관실 및 법안 담당자 등) 20~50여명이 참석한다.

의원입법 연찬회는 의원입법 지원업무에 대한 개관 및 추진절차, 의원입법 검토사례 및 정부입법 정책협의회 사례, 의원입법의 입안과정, 그리고 의원입법 관련 이슈에 대한 분임토의와 간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의원입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통해 각 부처 담당자들의 의원입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원입법 검토 및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하여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자 간 분임토의 시간에는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 방안,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활용 방안, 각 기관의 의원입법 국회 대응 시 애로사항 등 현안에 대하여 토론 및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매년 연찬회 개최 시 모든 교육과정이 마무리되면 참석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찬회 장소, 강의 구성 및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다. 매년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 해 연찬회 개최 시 최대한 반영하여 각 부처 법무담당자들에게 보다 유익한 의원입법 연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17) 상황에 따라 당일 일정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기도 한다(2011년). 2015년부터는 연찬회와 의원입법 세미나를 각각 격년마다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2014년, 2016년, 2018년에는 연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원입법 세미나만을 개최하였다.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 실적

구분	일시	장소	참석
2008년도	08.10.16~17	제주도 금호리조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 70여명
2009년도	09.6.4~5	부산 대명리조트	문화체육관광부 등 20개 중앙부처 직원 20명
2010년도	10.6.3~4	홍천 대명리조트	공정거래위원회 등 19개 중앙부처 직원 20명
2011년도	11.6.17(상반기) 11.12.14(하반기) ¹⁸⁾	여의도 렉싱턴호텔	공정거래위원회 등 25개 부처 직원 37명 국회 및 각 부처 실무자 60여명
2012년도	12.6.28 ¹⁹⁾	일산킨텍스	국회, 유관기관 및 각 부처 실무자 150여명
2013년도	13.6.4.	한국 프레스센터	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 국·과장 등 30여명
2015년도	15.8.27.~8.28.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	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자
2017년도	17.3.23.~3.24.	경주 힐튼호텔	국회 및 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자 33명
2019년도	19.4.23	부여 롯데리조트	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자 40여명

18) 2011년도에는 연찬회를 당일 일정으로 하여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연찬회는 매년 국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개최되는 의원입법 세미나와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19) 2012년도에는 법제처 주최 국제행사인 “아시아법제포럼”과 연계하여 아시아법제포럼 내 분과회의의 하나로 개최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 담당자 뿐 아니라 관련 학회, 로스쿨 학생 등 외부에서도 많이 참석하였다.

2019년 의원입법 담당자 연찬회 기본계획

1. 연찬회 목적

- 중앙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제처의 법제지원(정부입법 및 의원입법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제처-중앙부처간 상호 협력 체계 강화

2. 연찬회 개요

- (일시) 2019. 4. 23.(화) 10:00 ~ 17:00
- (장소) 롯데리조트 부여(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소재)
- (참석자) 약 40명(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자, 법령입안 담당자 등)

3. 연찬회 구성

- 법령입안지원제도 소개
 - 지원 대상 법령,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안내
 - 법령입안지원 추진 실적 및 실제 지원 사례 소개
 - 일자리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중점 지원 계획 소개
-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 적극행정 법령입안 소개
- 법령입안지원 제도 관련 질의 응답 및 토론
- 의원입법 지원제도 소개
- 의원입법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의원입법지원시스템 활용도 제고 방안
 - 법제처의 법안 검토·조정 결과 국회 전달방식 개선
 -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활성화 방안
- (분임토의) 의원입법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 및 발표
- (특강)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배우는 법률 입안의 이해
- (설문조사) 법제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조사

연찬회 설문조사서 예시(계속)

7.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공 외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상담 등 간략한 의견제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업무와 관련된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2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이용

1.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원입법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지원시스템 메뉴 중에서 이용하신 경험이 있는 항목을 표시해주세요.

(중복 체크 가능)

- () ① 안전함 또는 안전함(관계기관)에서 발의사실 확인
 () ② 법제처에서 법률안 상세정보에 입력한 관계기관 협의 필요사항 확인
 () ③ 법제처에서 법률안 상세정보에 첨부한 법리적 검토의견서 확인
 () ④ 법률안에 대한 부처의견 입력 및 타 부처 의견 확인
 () ⑤ 부처 간 협의 결과 입력 및 확인
 () ⑥ 국회입법현황 검색 및 통계 확인
 () ⑦ 이용 경험 없음
 () ⑧ 기타 (이용사항 기재:)

2. 현재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의견조회는 공문(온나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입법 시스템을 통해 직접 부처 간 의견을 조회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현재 의원입법시스템에서는 법률안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연찬회 설문조사서 예시(계속)

4.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이용 시 어떤 점이 불편하십니까? (중복 체크 가능)

- () ① 시스템의 빈번한 오류 발생
 () ② 검토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 찾기가 용이하지 않음
 () ③ 기능이 지나치게 복잡함
 () ④ 검색속도가 느림
 () ⑤ 고객센터의 전화응대 불편
 () ⑥ 불편한 점 없음
 () ⑦ 기타 (불편사항 기재:)

5. 의원입법지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2019년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 전반

1. 이번 워크숍 전반에 대한 소감은?

- ① 매우 유익하다 ② 유익하다 ③ 보통 ④ 유익하지 않다 ⑤ 전혀 유익하지 않다

2. 워크숍 장소·시설에 대한 의견은?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추천하고 싶은 다른 장소·시설 :

3. 워크숍 기간에 대한 의견은?

- ① 현행 1일이 적당 ② 조정 필요: ☐ 1박 2일, ☐ 2박3일

연찬회 설문조사서 예시(계속)

4. 특강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의견은?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업무소개, 외부특강, 분임토론 등 워크숍 진행 및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 ① 매우 적절 ② 적절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6. 시간을 늘리거나 줄였으면 하는 부분, 그 밖에 개선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2 • 의원입법 세미나 개최

목적

법제처는 정부·국회 실무자 간 교류를 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국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의견협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및 국회 담당자들과 의원입법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용

의원입법 세미나는 보통 하반기에 1회 실시²⁰⁾하며, 주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및 국회사무처·국회 상임위원회 공무원과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직원 30~40여명이 참석한다.

의원입법 세미나에서는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업무에 대한 발표와 함께 국회 법제실, 법제사법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및 외부 전문가의 발표도 함께 이루어진다. 행정부만의 입장이 아닌 국회에서 바라보는 의원입법의 현안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제3자인 외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 국회·정부 간 의원입법 협력방안도 같이 논의함으로써 정부와 국회 간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최근에는 과도한 규제 도입과 규제 수 증가의 원인으로 의원입법이 지목됨에 따라 2016년도 세미나에서는 국회,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협조체계와 주요 국가의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지원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원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8년도 세미나에서는 입법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의원입법 활성화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방안과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의 정부 역할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 의원입법 세미나를 개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이후 개최하였으나,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는 하반기 중으로 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2015년부터는 연찬회와 의원입법 세미나를 각각 격년마다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2014년, 2016년, 2018년에는 세미나만을 개최한다.

업무 프로세스

발표자 선정, 장소 섭외 (3개월 전)	• 발표자 섭외는 주로 법제처 내부는 의원입법 법제관, 국회 측은 법제실·법사위·상임위 입법조사관 중 섭외 • 발표 원고는 세미나 1개월 전까지 요청
기본계획 수립 (2개월 전)	• 일시, 장소, 구성 등에 대한 세미나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내부보고 및 국회 통보
자료집 발간 등 행사준비 (1개월 전까지)	• 국회 측 참석자 명단 확정²¹⁾ • 발표자 원고 취합하여 자료집 인쇄 • 시나리오, 말씀자료 등 준비
세미나 개최 (7월 ~ 12월 중)	
결과 보고	• 세미나 결과 보고 • 발표자 사례비, 장소 임차료 등 지급

세미나 개최 실적

구 분	일 시	장 소	참 석
2008년도	08.12.10.	여의도 렉싱턴호텔	국회 법제실, 법사위 입법조사관 등 30여명
2009년도	09.12.10.	여의도 63빌딩	국회 법사위, 지경위 입법조사관 등 30여명
2010년도	10.12.10.	여의도 렉싱턴호텔	국회 의안과, 법제실, 법사위 입법조사관, 특임장관실 등 40여명
2011년도	11.12.14.	여의도 렉싱턴호텔	국회 법제실, 법사위 입법조사관, 기획재정부, 건국대 교수 등 60여명
2012년도	12.6.28	일산 킨텍스	국회, 유관기관 및 각 부처 실무자 150여명
2013년도	13.8.28.	여의도 렉싱턴호텔	국회 법제실, 법사위 법제연구과장 등 40여명
2014년도	14.7.11.	여의도 렉싱턴호텔	국회 법제실, 국방위 입법조사관, 환경부 등 약 50여명
2016년도	16.6.15.	밀레니엄 힐튼호텔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법제사법위원회, 중앙부처, 학계 등 약 60여명
2018년도	18.11.23.	밀레니엄 힐튼호텔	국회, 중앙부처 공무원, 학계, 연구원 등 60여명
2020년도	20.11.6	밀레니엄 힐튼호텔	국회, 중앙부처 공무원, 연구원 등 30여명

21) 2012년도에는 법제처 주최 국제행사인 “아시아법제포럼” 및 의원입법 연찬회와 연계하여 아시아법제포럼 내 분과회의의 하나로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 담당자 뿐 아니라 관련 학회, 로스쿨 학생 등 외부에서도 많이 참석하였다.

연도별 세미나 주제

구 분	주 제	발 표 자
2008년도	- 국회 의원입법 검토 사례 - 제17대 국회 의원입법 사례별 분석 - 의원입법 관련 업무 프로세스 소개	- 국회 법제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법제처 - 법제총괄담당관실
2009년도	- 의원입법의 사례별 분석 1 - 의원입법의 사례별 분석 2 2009년 행정법제 분야 의원입법의 동향 2009년 사회문화법제 분야 의원입법의 동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 법제처 행정법제국 -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2010년도	- 의원입법 입안사례 - 의원입법 부처 간 이견 조정 사례 - 당정협의 사례 - 의원입법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방안	- 국회 법제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특임장관실 - 법제처 - 법제총괄담당관실
2011년도	- 정부의 의원입법 지원업무 개관 및 검토사례 - 제18대 국회 의원입법 분석 - 의원입법 관련 국회와 정부의 협력방안 -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사용 안내	- 법제처 법제지원단 - 국회 법제실 - 건국대 교수 - 법제처 법제지원단
2012년도	- 우리 국회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가 보는 의원입법의 현황 및 국회의 책임과 역할 - 정부가 보는 의원입법의 현황 및 정부의 책임과 역할 - 중국·일본·인도네시아의 입법과정 및 시사점 - 입법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바람직한 협력방안 - 의원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기능 확대방안 - 의원입법 내실화를 위한 과제 - 의원입법 지원업무 소개 및 협조사항 - 최근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	- 중앙대 명예교수 - 국회 법제실 - 법제처 법제지원단 - 중국 법제판공실 등 - 건국대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 대구대 교수 - 법제처 법제지원단 - 기획재정부
2013년도	- 의원입법의 활성화에 따른 개선방안 - 의원입법에 대한 효율적 정부의견 수렴방안	- 국회 법제실 - 법제처 법제지원단
2014년도	- 의원발의안 입안 사례분석과 개선방안 (국회 내 입안절차 및 부처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 의원입법 심의과정에서의 부처협의 강화방안	- 국회 법제실 - 법제처 법제지원단
2016년도	- 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협조체계 - 주요 국가의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 한양대학교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2018년도	- 의원입법 활성화에 따른 국회-정부 협력 방안 -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개선방안	- 송실대학교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2020년도	입법과정의 국회-정부 협력방안 :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교수 - 국회 입법조사처 - 한국법제연구원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4장

의원입법 검토기준

1. 검토 대상
2. 검토기준 및 검토사례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검토 대상



의원입법 검토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모든 법률안이다. 다만, 「국회법」, 「헌법 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 다른 헌법기관의 소관에 속한 법률안은 예산 지출, 정부 권한 침해 등 정부의 권한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Memo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사항은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i) 법리적 쟁점의 유무 여부, ii)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iii) 조세의 감면 여부, iv) 재정 지출의 증가 여부, v)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vi)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vii) 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01 • 법리적 쟁점의 유무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새로운 입법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법령이 아닌 다른 정책수단(행정지도나 예산조치 그 밖의 행정조치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법률로 정할 사항인지 또는 하위법령으로 정할 사항인지, 입법 내용이 해당 법률안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등 입법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지, 어디까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어떤 사항을 명령에 위임할 것인지 등 입법의 형식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제정 법률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과 유사한 목적의 현행 법률과의 관계에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사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100분의 20 이하인 시·도 및 시·군·구가 관할 구역 밖에 주민등록된 자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

검토의견

- 고향기부금 제도는 기부금품의 자발적 기탁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 통계청 발표에 따른 2016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이나, 광역시의 경우 최저 45.8%(광주), 최고 63.8%(울산), 도의 경우 최저 18.4%(전남), 최고 55.2%(경기), 시의 경우 최저 11.9%(전북 남원), 최고 64.2%(경기 화성) 등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고향기부금 제도 도입은 이러한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암묵적인 기부강요, 지방세의 유출이 예상되는 대도시권의 반발 및 고향기부금 유치를 위한 경쟁 과열로 인한 지역 간 갈등 유발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면, 암묵적 기부강요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고향기부금에 대해서도 기부금품 출연 강요금지 조항(제6조제1항) 및 위반 시 제재조항(제16조, 제17조)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외국 입법례)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기부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도 고려 가능함

* 일본의 제도는 개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출신지 포함)를 골라 기부금을 기탁할 경우 그 기부금의 일부를 국세인 소득세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주민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 일본의 고향세 기부실적은 2012년부터 급증하여 2012년 649억엔, 2013년 130억엔, 2014년 142억엔, 2015년 341억엔, 2016년 1,470억엔을 기록함(강원연구원, 2017. 6. 13. 정책메모 제626호)

- (입법론적 측면에서의 추가 고려사항)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일반법인 이 법에 특별한 기부금인 고향기부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정치기부금의 경우 이 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인 「정치자금법」을 제정하여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고향기부금도 일반적인 기부금과 다른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할 것임

헌법 위반 여부 검토

입법은 헌법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헌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모든 법률에 있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의 기본원리, 주요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 헌법상 권력분립의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 위반 여부의 판단은 법리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며, 헌법재판제도 등을 통하여 많은 사례가 축적되고 논의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대법원의 판결례 및 학계의 의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²²⁾

* 헌법의 기본원리

-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복지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평화국가 원리 등

* 헌법의 기본원칙

- 실체적 내용에 관한 원칙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최소보장의 원칙
- 법령 체계에 관한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



Memo

22)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제1편 제3장(법령 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과 부록 1 (법령 입안·심사시 헌법 관련 체크리스트) 및 「헌법과 법제실무」 등 참고

헌법 위반 여부 검토 사례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약국과 인접한 시설로서 그 약국의 개설자·종사자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그 밖에 약국과 의료기관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함

해당조문

- 제33조(개설 등)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2. 약국과 인접한 시설(약국의 개설자·종사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다만,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지 5년이 경과한 후 해당 약국의 개설자·종사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소유하는 곳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약국과 의료기관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토의견

-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과 인접한 시설로서 그 약국의 개설자·종사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등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직업 수행의 장소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선택한 직업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임
 - 한편, 약국의 개설자·종사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이 약국과 인접한 경우에는, 그 소유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는 제한이 생기므로, 이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음
- (명확성 원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같은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제33조 개설기준에 위배될 경우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규정으로 명확성의 원칙이 보다 강하게 요구됨
 - 안 제33조제7항제2호에서 약국과 ‘인접’한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인접’의 사전적 의미는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임.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방지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인접’한 시설의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안 제33조제7항제6호에서 열거된 사유 외에 기타 사유로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위임 규정의 불명확성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과잉금지원칙)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해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고,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헌법(제23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제한입법은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와 관련하여, '인접'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광범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고,
- 시설 소유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약국의 개설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넓게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약국의 영업 이익과 직접 관련 없는 단순한 약국종사자의 경우에도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까지 규율하게 됨
- 또한, 안 제33조제7항제6호는 열거된 개설금지 경우 외에 여러 가지 기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제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침해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Memo

헌법 위반 여부 검토 사례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인터넷 유명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상품등을 추천한 대가로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과 함께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해당조문

제2조(정의) 6. “인터넷 유명인”이란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매체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인터넷 유명인의 고지의무) ① 인터넷 유명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상품등을 추천한 대가로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과 함께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④ 인터넷 유명인이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토의견

- 헌법 제75조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헌재 2011. 12. 29. 2010헌바385 등 참조)
-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유명인이 안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 개정안에서 인터넷 유명인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 및 범위로서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 어느 정도가 소비자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인지,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인터넷 유명인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Memo

헌법 위반 여부 검토 사례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아이돌봄미의 결격사유에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형을 선고받은 자로 확대하며, 아이돌봄미 자격 취소사유에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함

주요쟁점

-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격사유의 확대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의견

가. 결격사유 확대 관련

● 아동학대관련범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결격사유 확대

- 개정안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그 형이 확정된 자로 결격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유죄로 인정되어 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그와 연관된 재범의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아이돌봄미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일률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개설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2013. 7. 25.자 2012헌마72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이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10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개정됨

● 기소유예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결격사유 확대

-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임

* 참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가 아동학대범죄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자에게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헌법 제27조제4항은 무죄추정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부과하더라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으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됨(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12헌바435 결정)
-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 기소유에 처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을 사실상 유죄로 취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자격취소사유 추가 관련

- 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자격취소사유에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결격사유 추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자격을 취소하게 하는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을 사실상 유죄로 취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행정처분 취소사유에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경우를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결격사유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임과 동시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 해석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개정안과 같이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모두 기재하는 경우, 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달리 이 경우에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동일한 내용을 결격사유에도 추가하고 있는 개정안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이를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자격취소사유에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이 취소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법체계상 모순·불합리·타당성 검토

새로운 입법은 기존의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헌법의 원리를 매개하는 법의 일반원칙(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불법행위금지 등)과 「민법」 등 일반법의 기본제도(행위능력,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체계적·통일적으로 운용되도록 법률안 내에서도 모순·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률 내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이미 일반화된 용어로서 정착된 용어나 기존의 다른 법령상의 확립된 용어와 같은 의미라면 그대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유지하여야 하며, 법률안이 목적하는 바의 의미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법체계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입안 심사기준」, 기존의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입법기술적 측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Memo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안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8조)
-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재발급하도록 함(안 제1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검토의견

- (정의규정 관련) 제정안 제2조제3호에서는 “가맹점”을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별가맹점”과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환전대행가맹점”으로 구분하고 있음
 - 즉, “가맹점”은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제정안 제2조제1호는 “가맹점”에 상품권을 제시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전대행가맹점에서도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가맹점”을 “개별가맹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등록거부 관련)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략)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데,
 - 제정안의 취지가 안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와 같이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 (등록취소 관련) 제정안은 등록거부사유 중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만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등록거부사유를 제외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안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등록거부사유를 모두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는 “이용자” 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안 제11조는 “사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추가적으로, 등록취소는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문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상품권 재발급 관련) 안 제12조제1항은 제2항과 달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행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12조제1항과 제2항의 표현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지원 관련)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지방재정법」 제20조), 국가는 개별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정책상 필요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지방재정법」 제23조), 제정안에 국가의 지원을 명시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다만, 상품권 활성화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도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임



Memo

벌칙 검토

해당 법률안에 처벌 또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준 또는 과태료 수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준 또는 과태료 수준이 책임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형벌의 경우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벌칙 검토 사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검토의견

- 안 제33조제2항제3호의3 및 제89조의3제3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및 제71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 개정안과 같이 「병역법」에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병역법」이 적용될 것임.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때 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고, 사회 복무요원 복무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게 되는데, 양자 간에 현저한 법정형의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도 발생함.
-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처벌규정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법정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02 •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하나의 법률은 그 개체로서 통일성을 갖추어야 하며, 국법 체계 전체와도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률 간에 저촉·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이나 집행에 혼란을 주며, 국가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비효율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법률은 체계적·통일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안과 다른 법률 상호간에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모순·저촉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하나의 법률안 내의 상호간에도 각각 형성하고 있는 법적 제도의 측면에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 모순·저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모순·저촉되지 않게 기존의 법률 또는 새로운 법률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명백하게 모순·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문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석·적용상 의문이 없도록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정한 지역 또는 집단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의 경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안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의 다른 법률, 특히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법률(예컨대,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과의 관계에서 기존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Memo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소방안전체험관 업무를 소방청장 소관으로 하고,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을 촉진하며, 소방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임
 - 소방안전체험관을 국립·공립·사립 등 설치 주체에 따라 구분함
 - 국립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청장 소속으로 설립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안전체험관을 설립하려면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국립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검토의견

1. 소방안전체험관의 업무 소관

- 제정안은 소방안전체험관 업무를 소방청장 소관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상의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체험관 업무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 내 업무 조정이 필요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 안 제19조는 소방청장이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국토계획법 제7조에 따라 보전과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사립소방안전체험관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건축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지정한 취지,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유사 입법례가 있으나 공유수면을 매립한 간척지는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동일하게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3. 부담금 감면

- 안 제20조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담금을 감면하면 다른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므로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부담금 감면은 평등원칙에 비추어 한정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함
 - 헌법재판소는 부담금도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준하는 원칙에 구속되어야 하고(헌재 1998. 6. 25. 95헌바35),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시한 바 있음
- 따라서 「농지법」 제38조, 「초지법」 제23조 등에 규정된 감면사유, 감면대상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도 다른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민간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쉽도록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게 한 법률이므로(같은 법 제3조) 개발규모, 부담금 감면 필요성에서 소방안전체험관과 동일하게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부담금 부과 근거 법률(「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시설을 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방안전체험관을 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 부담금 감면기준은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금 부과요건과 유사하므로 부과 여부를 알기 쉽게 하고 다른 감면대상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능하면 「농지법」등 부담금 부과 근거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하 생략)

03 • 조세의 감면 여부

법률안에 소득세 등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국가세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안에서 빈번히 등장하므로 각 소관부처에서는 해당 법률안에서 정하는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조세 감면은 유사한 영역의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조세감면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조세 감면을 위해서는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들 법률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Memo

조세의 감면 여부 검토 사례

청년기본법안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등을 수행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등을 하도록 함

검토의견

-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 및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을 한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취지에 배치되며, 조세지원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제정안에 따른 감면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납세자가 조세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Memo

국가 재정부담 유무

법률안에서 정하는 정책적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해당 법률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지출의 증가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단기·중기 또는 장기적 재정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법률안이 법률로써 확정된 후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재정확보가 되지 않아 실제로 집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의 증가가 수반되는 법률안에는 원칙적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므로 이를 통해서 재정지출의 증가가 수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일반회계의 증가 또는 특별회계의 신설·증가를 포함하고 있거나 기금 또는 부담금의 신설·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들 법률안의 소관부처에서는 재정정책과 회계제도, 기금 및 부담금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거나,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등의 비율을 높이는 법률안 등은 국가의 재정 운용을 경직시키는 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특례 유무

법률안에서 특정한 단체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인정은 국유·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저해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들 법령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검토 사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검토의견

-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도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 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중략)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것임(98헌마216, 2000. 6. 1.).
-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Memo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여부

법률안에 정부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의 폐지 또는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조직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로서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감사원 등 헌법기관을 제외하고는 중앙행정조직을 일괄하여 통합하여 규정하므로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을 법률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찬가지로 기존 조직의 폐지 또는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도 그것이 법률사항일 때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들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에서 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의 정부 부처에 소속기관을 법률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속기관의 설치에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입법목적 달성을 수 없는지, 개별법에 소속기관 설치의 근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 부처에 위원회 조직을 신설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없는지 등 위원회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참조), 「정부조직법」 상 단순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한 점에서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인원의 소요 여부

개별 법률안에 인력의 소요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주요 검토사항이다. 통상적으로 조직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증가가 수반되므로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조직 및 인력과 관련 있는지는 법률안에 첨부되어 있는 비용추계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의 소속을 변경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등을 둘 필요가 있다. 조직 및 인력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여부 검토 사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

검토의견

- 안 제3조제1항에서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여 그 소속이 불분명함
- 헌법에서 국가 권한 행사 주체를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분하고 있으므로 국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설치하는 기관은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함
-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행정부 소속이라고 명시되지 않았고 업무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²³⁾)
-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수행하던 정책 수립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므로 (안 제14조)²⁴⁾ 정부 내 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행정부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소속인지, 국무총리 소속인지 등에 따라 통할권의 주체가 상이하므로 제정안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소속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3) 청구인은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타 부처와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피청구인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국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청구인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4) 제1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목표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종합계획 수립 및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검토의견

- **(위원회 설치의 요건)** 행정기관위원회법 제5조에 의하면 심의·자문위원회의 경우 ①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고, ②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 제정안의 입법목적 또는 취지가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회의 자문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행정기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유사·중복 위원회)** 현행 법령상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움.
 - 제정안이 지원대상을 노인 중 “재활용품수거노인”으로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다른 사회복지 영역 또는 노인복지 영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정책을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정안의 주된 내용이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논의와 연계되어 있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의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별도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음.
- **(위원회의 성격)** 제정안이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위원회에서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당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
 - 다만,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위원회 심의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위원회 설치근거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인원의 소요 여부 검토사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사업을 전담할 부서와 담당 공무원을 두도록 함.

검토의견

-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의 설치는 법률로, 제4항 및 제6항에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서 행정각부를 법률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설치는 법률로 하도록 하면서 그 하부조직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자치조직권도 지방자치권 중에 속하므로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임.
- 따라서 법률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두지 않는 방안이 바람직함.



Memo

06 •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해당 법률안에 인·허가 규제가 신설되거나, 등록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변경되거나 기존의 인·허가, 등록 등의 요건이 강화되는 등 규제의 신설·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정책상 경기회복과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률안이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 간의 비교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Memo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검토 사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검토의견

- 헌법 제15조²⁵⁾와 제119조제1항²⁶⁾에서 직업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하면서, 제37조제2항²⁷⁾과 제119조제2항²⁸⁾에서 기본권 제한과 경제에 관한 규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음.
-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임²⁹⁾.
-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함.
- 기본권인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그 침해가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로 정당화되고 또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즉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정해야 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똑같이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衡量하여 양자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이루어져야 함³⁰⁾.
- 관광숙박업도 숙박업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됨³¹⁾.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1)에서 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는 이미 도입되어 있음.
-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외에 신고의무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입법례를 살펴보면 요금 인가·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 요금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도록 하는 입법례, 게시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음.

25)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6)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규제	법률	요금
인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전기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	기간통신사업자 서비스 요금
	「항공사업법」 제14조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	항만하역사업 운임 및 요금
승인	「수도법」 제38조	수도요금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1항	기간통신사업자 서비스 요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집단에너지 요금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	항만하역사업 운임 및 요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마리나항만 이용요금
게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광고판매대행업무 요금 기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	산후조리원 서비스 요금체계

- 요금 인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는 입법례는 대체로 독점성이 강하여 자유롭게 요금을 결정하게 하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분야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관광숙박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외에 신고의무를 도입할 정도로 독점성이 강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관광진흥법」에서 동일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7)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28)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29)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결정, 1997. 4. 24. 선고, 95헌마273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마109 결정.
- 30)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 3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7 • 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 여부

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유무

법률안에 둘 이상의 부·처·청과 관계되는 정책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각 부·처·청이 국회를 상대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정부의 통일된 의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률안이 발의되면 소관부처는 그 법률안에 다른 부처와 관련되는 정책적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정책적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입장을 정리한 후 관련부처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쟁제한적 사항 유무

법률안에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에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법률안에 경쟁제한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공정 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법률안에 실제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규제가 비현실적일 경우 정책집행 당국이나 국민 입장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관부처에서는 해당 법률안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법안에서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에 대한 벌칙, 행정상 제재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부과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어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검토의견

- 안 제50조의2에서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입국금지 요청대상은 「검역법」 제2조제7호의 검역관리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이 해당됨

- 최근 개정된 「검역법」(법률 제17068호, 2020. 3. 4. 일부개정) 제24조에서는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의 대상자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입국금지 요청대상자는 「검역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함)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동일한 입국금지대상자에 대하여 「검역법」 상 입국금지요청 필요성(공중보건상 큰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과 이 법 상 입국금지요청필요성(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입법필요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24611호)이 발의('20.2.13) 되었으나, 국회 심사과정('20.2.19.)에서 검역법과의 중복으로 의결되지 못함

- 또한, 양 법에서 모두 규정을 둘 경우, 실제로 어느 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입국금지가 이루어 지는지 집행상 혼동을 줄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검역법」과 별도로 이 법에서 외국인입국금지요청 근거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입국금지요청전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사무,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가, 방역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두루 고려해야 할 외국인입국금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나. 자금의 긴급지원

- 현행 제70조에서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폐쇄 등의 방역 조치 및 소독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70조의5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손실보상 대상자에게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긴급지원 자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우선 지급’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상 명확하지 않음
 - 긴급지원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효(實效)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필수 절차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의 문구를 추가 하는 방안 또는 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법률에서 직접 명확히 기술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음



Memo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5장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활용

1. 의원입법 지원 업무 소개
2.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사용자 준비사항
3. 법제처용 매뉴얼
4. 소관부처용 매뉴얼
5. 관계부처용 매뉴얼
6. 그 밖의 활용 정보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01 • 의원입법의 심사 절차: 법제업무 운영규정 §11의2, §12조, §12의2

국회	법률안 발의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법제처	발의현황 파악	발의사실 및 부처 협의사항 통보	- 국회 심의현황 파악 - 법률안 관련 자료 수집 - 법리적 검토필요사항 통보 - 심층적 의견 제시 - 부처 간 이견 법안 조사·환류 및 이견조정 촉진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및 정부 의견 정립	본회의 의사 일정 및 결과 모니터링
소관 부처	소관 의원입법 동향 파악	- 소관부처 의견 정립 - 관련부처 의견 수렴	- 의견수렴 결과를 법제처 및 상임위 전달 - 관련부처 의견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회신 - 관련부처와 이견내용 협의·조정	통일된 정부의 의견을 반영
관련 부처	다른 부처 소관 의원입법 중 관련 사항 파악	소관부처에 의견 제출	- 소관 부처와 이견사항 협의 - 제3기관에 이견 조정 요청	통일된 정부 의견 정립에 노력

02 •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

가. 개관

의원입법 모니터링	의원발의 법률안		부처협의 지원
• 국회 심의현황 파악 • 국회 세미나 등 자료 수집 • 법안 관련 참고자료 수집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1차	발의사실 및 부처협의 필요사항 통보	• 부처 간 이견법안 조사·환류 및 이견 조정 촉진 •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한 정부의견 정립
	2차	법리적 검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3차	심층적 의견제시	

나. 주요업무 소개

주요업무	소개	대상
발의사실 및 부처협의 필요사항 통보	원활한 부처협의 진행과 신속한 대응을 지원	• 의원발의 법률안이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경우 • 법안의 내용이 다른 부처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법리적 검토 필요사항 의견제시	소관부처가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의원발의 법률안이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경우 • 법안의 내용이 다른 부처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심층적 의견제시	법제처의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령심사에 준하는 상세한 의견을 제시	• 소관부처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경우 • 관계 부처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소관부처의 법제의견 정립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입법정책(실무) 협의회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여 국회에 조율된 정부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	•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 (협의회) 법제처장이 의장이 되며, 소관기관 및 관계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위원으로 안전별로 위원을 구성 ※ (실무협의회) 안전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개요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은 의원입법의 발의사실 통보, 법제처 검토의견의 통보, 각 부처의 부처협의 결과 등록 등 의원입법과 관련한 정부 내 업무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안과 관련하여 국회, 소관부처, 관련부처,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부의 업무용 시스템이다.

법제처가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목적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과 연동하여 의원입법의 발의 및 국회 심의 진행현황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종전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의원입법 관련 공식적·비공식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원입법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입법지원센터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안 자료를 1일 3회 제공 받고 있다. “의원입법 지원 > 안전함 또는 국회입법지원”에서 보이는 법안의 상세 조회 페이지에서는 국회의 심의 진행 현황,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서, 해당 법안과 관련 있는 관계부처 및 협의 필요 조문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법제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부 법안의 경우 법제처의 검토의견서도 조회할 수 있다. 그 밖에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언론자료 등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아 오는 자료가 실시간이 아니므로 시점 차이에 따라 의안정보 시스템에 있는 의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의안원문 등의 문서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안 원문 등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망에서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하거나, 정부입법지원센터 고객센터(1577-9178)로 문의하여야 한다.

구성 및 업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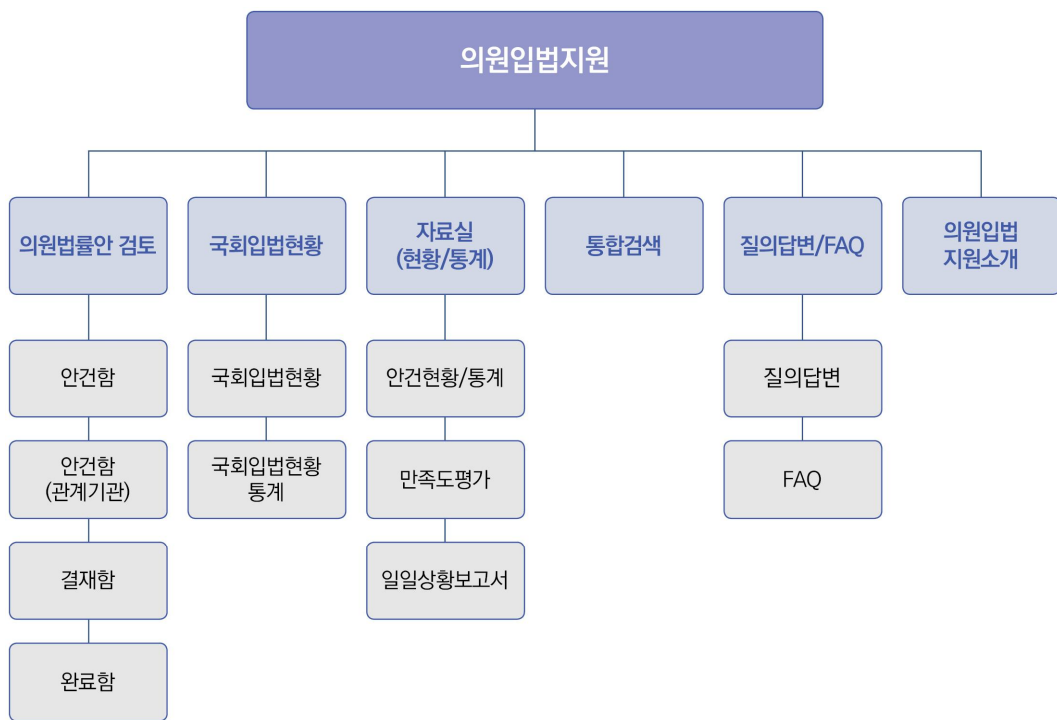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전체 메뉴는 크게

- ① 본인이 소속된 부처와 관련된 의원입법안을 조회하고 해당 의안에 대한 심사 현황, 협의필요 사항 및 관계부처 유무, 국회 소관위 검토보고서, 법제처 검토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원 입법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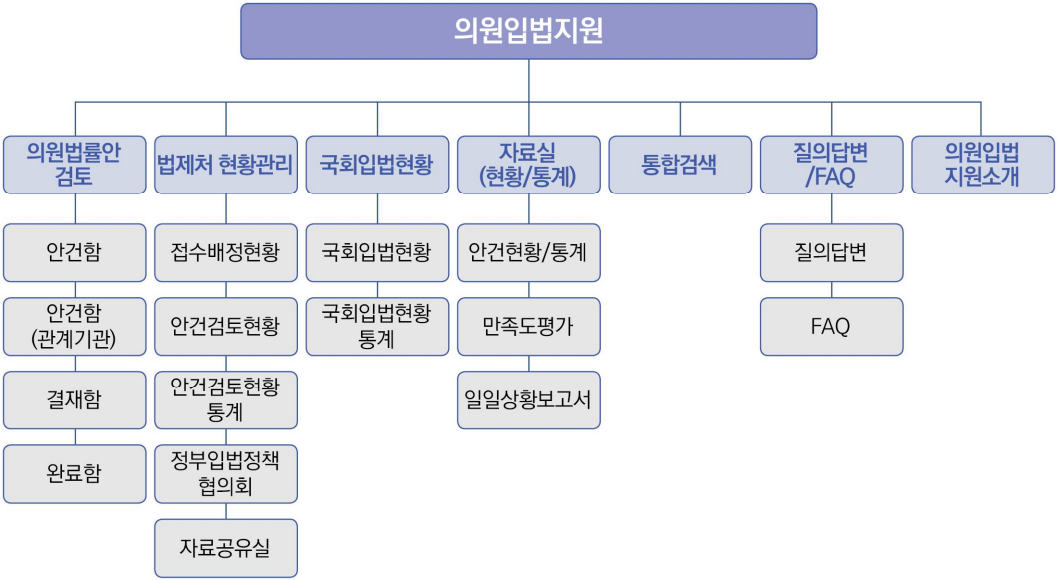
- ② 발의된 전체 의원입법안을 조회하고 해당 의안에 대한 심사 현황, 협의필요사항 및 관계부처 유무, 국회 소관위 검토보고서, 법제처 검토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회 의사일정 현황 까지 파악할 수 있는 국회입법현황
- ③ 법제처 내부 관계자가 의원입법안을 조회하고 기타 앞에서 언급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제처 현황·관리(법제처에서만 사용)로 나눌 수 있다.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의 사용자는 법제처와 각 중앙부처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제처 직원이 사용하는 시스템과 각 부처 담당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약간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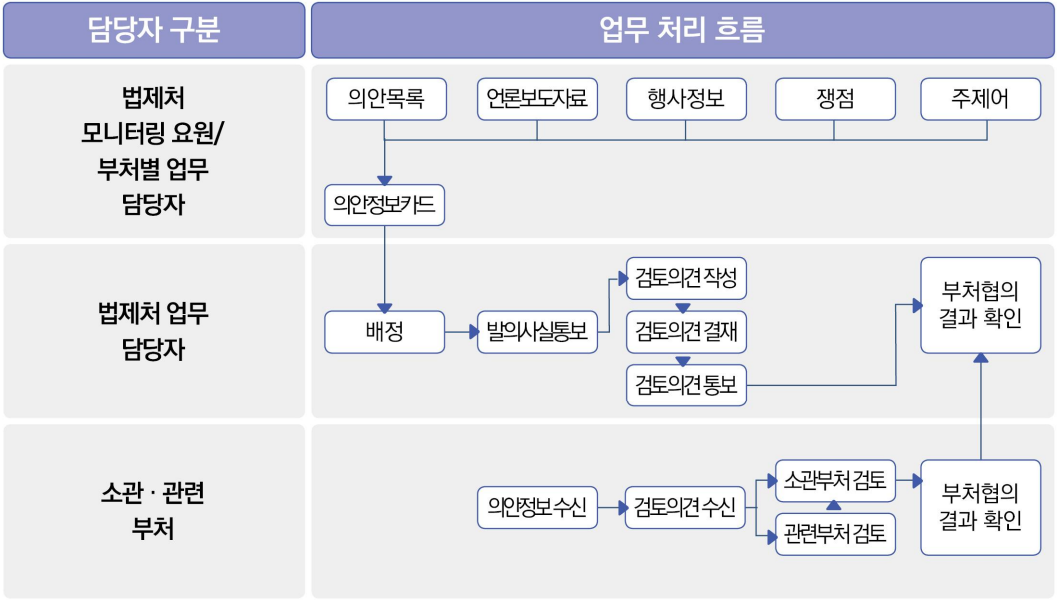
의원입법지원시스템(부처 사용) 메뉴 구조도



의원입법지원시스템(법제처 사용) 메뉴 구조도



의원입법지원 업무 처리 흐름도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사용자 준비사항



01 • 시스템 이용 대상

정부입법지원센터는 법령입안시스템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주로 각 부처 법무담당 부서 직원이 시스템 이용 대상자인데, 각 부처 법무담당관 직원은 법제처에서 시스템을 통해 통보하는 법률안 발의사실 수신 후 자기부처 내에서 해당 법률을 담당할 소관 부서를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조직, 예산과 관련되는 법안은 협의 필요성이 더 높으므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법무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조직기획과, 예산총괄과도 시스템 상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한다.

02 • 시스템 접속

내부 업무망 주소창에 www.lawmaking.go.kr(정부입법지원센터)을 입력하여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03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정부정책의 실현을 지원하는

정부입법 지원센터

로그인

[정부입법](#)
[법령해석](#)
[의원입법 지원](#)
[자치입법 지원](#)
[법제지식](#)
[법제교육](#)
[도움말](#)



정부입법지원센터는 법령안 입안·심사 및 공포,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법제업무 중 하나인 시스템에서 통합 처리하고, 법제업무 과정에서 국민 및 공무원 간,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이트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입법정보를 상세하게 조회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유지 ☒ 아이디 저장

glis@moleg.go.kr

로그인 안내 : 1577 - 9178

로그인 **GPKI/EPKI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으셨습니까?

▶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약관동의

정부입법지원센터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은 후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GPKI 실명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인증 단계로 진행한다. 공무원은 ‘GPKI 실명인증하기’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개인 PC 환경 문제로 인해 GPKI 인증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여기(동의 후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약관동의

회원가입을 위해서 아래 정부입법지원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주세요.

☐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모두 동의합니다.

■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생활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통합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이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법제처 정보시스템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법제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법제처에서는 기본적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와 정보주체 각각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정보로 구분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입 정보에 대한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단, 실명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에서는 실명인증을 하지 않을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원구분	필수항목	선택항목
일반회원	아이디, 성명, 이메일,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닉네임, 소속 회사명, 부서명, 관심지역(거주지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법제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이 없도록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본 동의의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모두 동의합니다.

GPKI / EPKI 실명인증하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PC 환경으로 인해 GPKI / EPKI인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시에는 **여기(동의 후 회원가입)**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정보 입력창

회원정보 입력 창에서 '필수'인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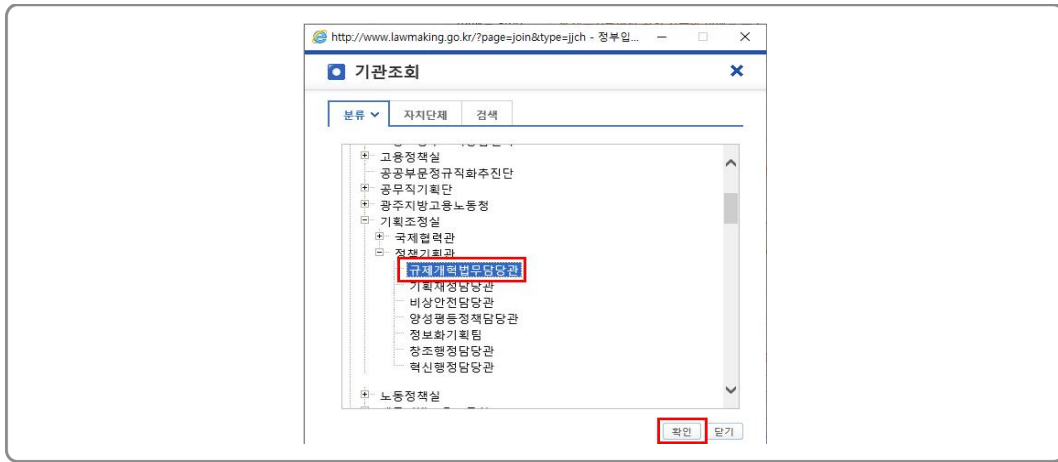
■ 회원정보 입력 (* 표는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기본 정보	사용자 아이디* (이메일 형식)					
	※ 정부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이메일 주소 형식이어야 합니다. 예) abc@moleg.go.kr					
	성명*		닉네임			
	직위(직급)*					
	※ 직위(직급)를 입력해주세요.					
	외부 이메일 *		@ 선택			
	내부 이메일					
소속 및 연락처	비밀번호 *					
	※ 8자 이상의 영문과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예) abc123!@					
	비밀번호 확인 *					
	소속 기관명*					
	※ '온나라 사용자 확인'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명 선택시, 하위 부서 과명칭까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관심지역 (거주지역)	광역 자치단체 (사·도)	기초 자치단체 (군·구)			
사용자 인증			선택			
	전화번호*		예) 02-1234-5678	팩스번호		
	예) 02-1234-5678					
	휴대폰 번호*					
	※ 비밀번호 분실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예) 010-123-4567					
	주소					
사용자 설정	홈페이지 주소	http://		기관장 호칭		
	알림정보 수신지정	☐ 휴대폰 문자				
	첫화면 설정	상위 메뉴	선택		이동할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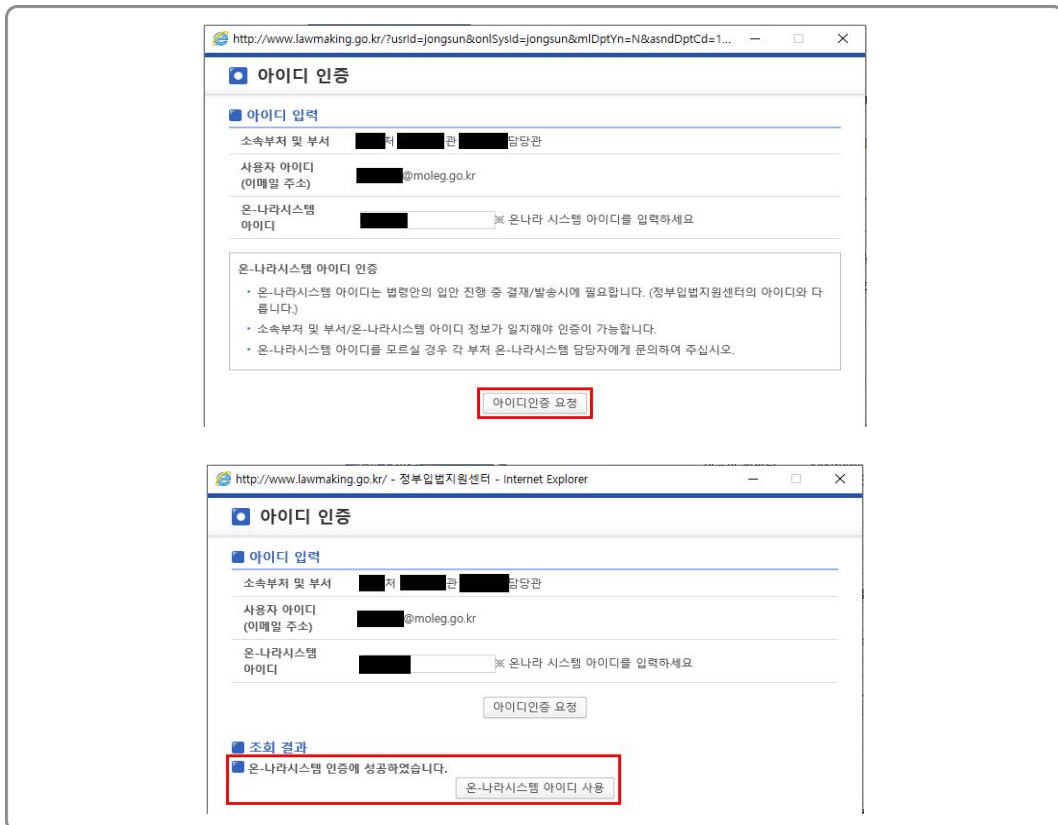
* 사용자 아이디는 반드시 행정망 이메일 주소 형식(~@korea.kr)이어야 한다.

* '온나라 사용자 확인'을 클릭하여 온나라 사용자 ID를 인증 받는다.

* ‘온나라 사용자 확인’시 현재 소속기관-부서까지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 ‘아이디인증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에 성공하였다는 메시지와 함께 ‘온나라 시스템 아이디 사용’ 버튼이 생성된다.



* * 표시된 필수 항목을 입력한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기호 모두를 포함하여 8자 이상으로 입력한다.

* GPKI 인증서를 등록한다.(미등록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

The image shows a web interface for selecting and registering a GPKI certificate. At the top, there's a section titled '인증서 선택' (Certificate Selection) with icons for different storage media: 보안토론, 이동식디스크, 스마트카드, 휴대전화, and 하드디스크. Below this is a section for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Certificate Selection and Password Entry). It contains a table with columns: 인증서 아이디 (Certificate ID), 만료일자 (Expiration Date), 용도 (Purpose), and 발급자 (Issuer). The first row shows: 012-001, 2017-07-12, 공무원용 (Public Official Use), and CA131100001. Below the table is a field for '인증서 비밀번호' (Certificate Password) and a '확인' (Confirm) button,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re are also '취소' (Cancel) and '인증서 보기' (View Certificate) buttons.

* 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등록한다. 모든 항목을 입력했으면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후, 상단의 '의원입법 지원'을 클릭하여 의원입법지원시스템사용을 시작한다.

The image shows the '정부입법 지원센터' (Government Legislation Support Center) dashboard.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정부입법', '법령해석', '의원입법 지원', '자치입법 지원', '법제지식', '법제교육', and '도움말'.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입법예고** (Legislation Notice): A section for '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with a list of notices and a '더보기' (More) link.
- 정부입법 추진현황** (Government Legislation Progress): A bar chart showing the progress of government legislation for 2020. The chart has two bars: one for '입안예정' (171) and one for '부처입안' (49). The total number of cases is 393.
- 하위법령 제제 마련 현황** (Subordinate Legislation Preparation Status): A section for '하위법령 제제 마련 현황' with a list of cases and a '더보기' (More) link.
- 입법예고** (Legislation Notice): A section for '입법예고' with a list of notices and a '더보기' (More) link.
- 의원입법 지원** (Legislation Support for Members of Parliament): A section for '의원입법 지원' with a list of cases and a '더보기' (More) link.
- 법제지식** (Legislation Knowledge): A section for '법제지식' with a list of cases and a '더보기' (More) link.
- 법제교육** (Legislation Education): A section for '법제교육' with a list of cases and a '더보기' (More) link.
- 도움말** (Help): A section for '도움말' with a list of cases and a '더보기' (More) link.

 The right sidebar contains a '로그아웃' (Logout) button, a '나의계정' (My Account) button, and a '나의할일' (My To-do List) button. There is also a '메시지' (Message) button. At the bottom, there is a '국민참여입법센터' (National Participatory Legislation Center) section with a phone number '1577-9178' and a '국민참여입법센터' (National Participatory Legislation Center) logo.

04 • 사용자정보 현행화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발의된 법안과 관련있는 부서를 기준으로 해당 부서원 모두에게 의원 입법 심의 변동사항을 시스템상 자동으로 문자로 알리는 3단계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개인정보(부서명)가 정확하지 않아 담당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문자가 발송 되는 경우가 많으니 부서 이동 등 정보에 변경이 생길 경우 가입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변경 > 사용자 설정에서 휴대폰 문자 수신 지정을 체크하여야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3단계 통보: 해당 법안의 발의 단계뿐만 아니라 상임위 상정, 상임위 의결 시 시스템에 등록된 법안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sms와 e-mail을 통해 공지하는 서비스

담당자 정보 변경 방법

정부입법지원센터

메시지 3 | 결제 | 로그아웃

정부입법 | 법령해석 | 의원입법 지원 | 자치입법 지원 | 법제지식 | 법제교육 | 도움말

개인정보 변경

나의의견 | 통합 나의의견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입법정보 발송 신청 | 송수신 메시지

회원정보 입력 (* 또는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취소 | 저장

기본 정보

사용자 아이디* [아이디를 입력] ※ 정부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이메일 주소 형식이어야 합니다. 예) abc@moleg.go.kr

성명* [성명] 닉네임

직위(직급)* [직위를 선택] ※ 직위(직급)를 입력해주세요.

외부 이메일* @ [선택] [선택]

내부 이메일 [이메일을 입력]

새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 ※ 8자 이상의 영문과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예) abc123!@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를 입력]

소속 및 연락처

소속 기관명* [법제처] ※ '온나라' 사용자 확인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명 선택시, 하위 부서 과명창까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관심지역 (가주지역) [광역시도] [자치단체 (군·구)]

전화번호* 044-200- [전화번호를 입력] 예) 02-1234-5678 팩스번호 044-200- [팩스번호를 입력] 예) 02-1234-5678

휴대폰 번호* 010- [휴대폰 번호를 입력] ※ 비밀번호 분실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예) 010-123-4567

주소 [주소를 입력]

홈페이지 주소 http://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 기관장 호출 [기관장 호출을 입력]

사용자 인증

인증서 등록 [인증서를 등록] ※ GPKI / EPKI 인증서 등록

사용자 확인 [온나라 사용자 확인] ※ 지자체의 경우 온나라 사용자 확인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용자 설정

알림정보 수신지정 ☒ 휴대폰 문자 ☐ 휴대문 문자

회원명 설정 [회원명을 입력] 상위 메뉴 [상위 메뉴를 선택] 이동장 메뉴 [이동장 메뉴를 선택]

3월

법제처용 매뉴얼



01 시스템 접속

법제처 사용자는 법제포털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의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정부입법지원센터로 별도의 로그인 없이 곧바로 접속할 수 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접속하여 보이는 메뉴 중 ‘의원입법 지원’을 클릭한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Legal Portal System interface. At the top, the '정부입법' (Government Legislation) menu item is highlighted in the navigation bar. On the right side, under the '시스템 바로가기' (System Quick Links) section, the '정부입법지원센터' (Government Legislation Support Center) link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indicating the next step in the process.

02 • 의원 법률안 검토

의원입법 검토 부분은 크게 네 개의 메뉴 즉, ① 안전함, ② 안전함(관계기관), ③ 결재함, ④ 완료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입법
법령해석
의원입법 지원
자치입법 지원
법제지식
법제교육
도움

• 의원법률안검토
• 법제처 현황관리
• 국회입법현황
• 자료실(현황/통계)
• 통합검색
• 질의답변/FAQ
• 의원입법 지원 소개

의원법률안검토

- 안전함**
- 안전함(관계기관)
- 결재함 0
- 완료함

법제처 현황관리
국회입법현황
자료실(현황/통계)
통합검색
질의답변/FAQ
의원입법 지원 소개

대 화 창

검토
통계

제안대수 제21대
제안일자
회의일자
국회현황 전체
소관부처 부서배정 전체
소관부처 전체
심층검토 여부 전체
법제처 추진현황 전체
소관부처 추진현황 전체
법제처 결재일자
관계부처 전체
협의결과(파일) 전체
관계부처 의견(파일) 전체
비용추계서 첨부(파일) 전체
이견 전체
제안자
검토자
검색어
의안번호 또는 의안명을 입력해주세요.
※ 부처 지정 및 의무협의대상 관련 이견이 있을 시 해당 법안 법제처 담당자와 유선상 협의 후 의무협의실시여부 결정함(담당자는 해당 법안 상세페이지 참조)

전체 294건 (1/30)
협의파일
의견파일
비용파일
의무협의 대상
국정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일자, 발의자)	국회현황 (추진일자)	국회결과 (회의일자)	법제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467호, 2020. 7. 6. 이달곤의원 등 13인)	발의 (2020. 7. 6.)	(2020. 7. 6.)	발의사실통보 (2020. 7. 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461호, 2020. 7. 6. 김성주의원 등 18인)	발의 (2020. 7. 6.)	(2020. 7. 6.)	발의사실통보 (2020. 7. 6.)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460호, 2020. 7. 6. 김민기의원 등 10인)	발의 (2020. 7. 6.)	(2020. 7. 6.)	발의사실통보 (2020. 7. 6.)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448호, 2020. 7. 3. 이만희의원 등 13인)	발의 (2020. 7. 3.)	(2020. 7. 3.)	발의사실통보 (2020. 7. 4.)

- 발의사실 수신, 법제처 검토의견 수신 등 의안에 대한 부처간 검토의견 공유
- 검토의견 작성, 협의결과 등록과 같은 검토업무 진행을 관리

구분	메뉴 설명
안전함	- 의안명, 의안번호, 제안일자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이용한 의원발의안에 대한 검색 - 로그인자가 속한 부처가 소관부처로 지정된 안전들만 검색됨 - 부처의 법무담당부서원은 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 - 부처의 담당자는 검토의견 및 부처협의 내역을 등록
안전함 (관계기관)	- 의안명, 의안번호, 제안일자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이용한 의원발의안에 대한 검색 - 로그인자가 속한 부처가 관계기관으로 지정된 안전들만 검색됨 - 부처의 법무담당부서원은 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 - 부처의 담당자는 검토의견 및 부처협의 내역을 등록
결재함	- 정부입법지원 센터의 내부결재 목록 및 온나라 연계 기관함 목록에 대한 검색 - 로그인자가 결재해야 할 결재문서 목록 (결재 승인/반려 시에는 목록에서 사라짐) - 결재상신/ 검토완료/ 결재철회/ 결재반려 된 목록 검색
완료함	내부종결, 검토불필요, 강제완료 된 안전목록 검색 (각 상태는 내부종결 취소, 검토필요, 강제완료 취소 할 수 있음)

① 안전함

소관부처 및 법제처 담당자는 법률안이 의원발의되면 해당 법률안이 속하는 상임위원회를 기초로 시스템 상 자동으로 배정된 결과를 ‘의원입법 검토 > 안전함’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때, 소관부처나 법제처 담당자가 잘못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안 상세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 기본정보 담당자정보에서 수정할 수 있다.

정부정책의 실현을 지원하는
정부입법 지원센터

정부입법

법령해석

의원입법 지원

자치입법 지원

법제지식

법제교육

도움말

메시지 44 | 즐겨찾기 | 로그인 | 신

• 의원법률안전검토 • 법제처 현황관리 • 국회입법현황 • 자료실(현황/통계) • 통합검색 • 질의답변/FAQ • 의원입법 지원 소개

의원법률안전검토

• 안전함

• 안전함(관계기관)

• 결재함 0

• 완료함

법제처 현황관리

국회입법현황

자료실(현황/통계)

통합검색

질의답변/FAQ

의원입법 지원 소개

법정정보 공유형
 검색

안전관련 찾아본 자료

내부종결
검토불필요
수정
목록

국회 검토자료	소관부처 의견	관계부처 의견 (총 0개)	법제처 의견
의원원문			

국회 입법정보
 ▶ 법률안 정보 ^접기

의원명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노종래의원 등 10인, 제2101348호(2020. 7. 2), 제379회 국회(임시회)	의원원문/ 비용주게서	의원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자 소음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나 소음유통을 때 버렸는지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그러나 운전자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단속관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아간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법제처 검토자 및 분류
 ▶ 담당자 정보 [법제처]

담당분야	사회문화 ▼	법제관명	장 ▼
담당자명	신 ▼		

▶ 분류항목

협의사유	협의사유 추가 ▼
법리	☐

▶ 소관부처/관계부처
 ▶ 부처 지정/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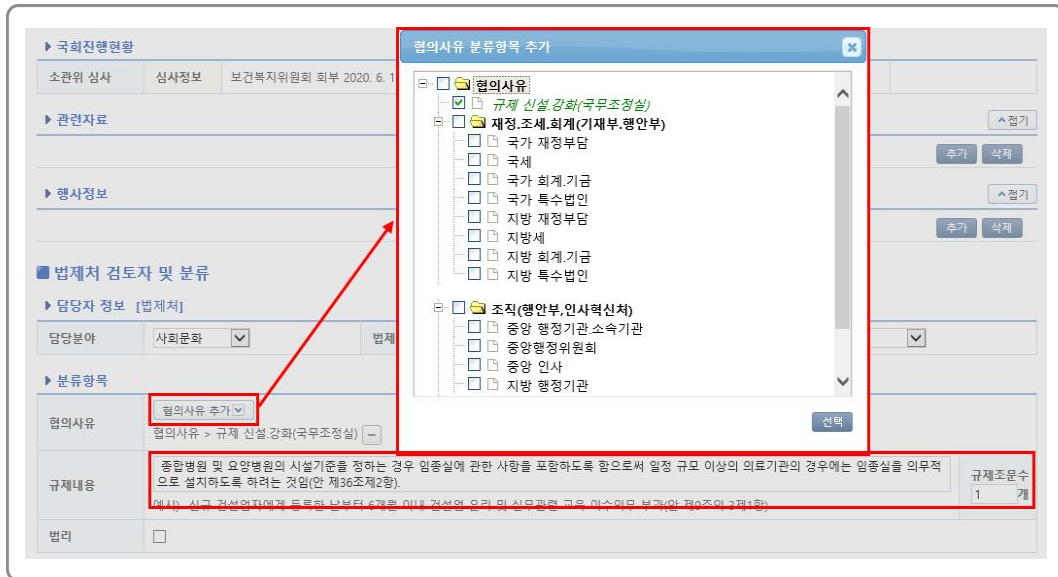
소관부처 선택	부서/담당자	배정통보일	확인일자	소요기간
환경부	생활환경과 선택	미통보	2020. 7. 6.	0일
관계부처 선택	부서/담당자	배정통보일	확인일자	소요기간
	선택	미통보	미확인	

발의사실 통보

안전이 배정되면 법제처 담당자는 해당 안전의 발의사실을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발의사실 통보는 ① 협의사유 지정, ② 관계부처 지정, ③ 협의 필요 조문 특정, ④ 배정 통보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 협의사유 지정

각각의 법률안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우측 상단의 ‘수정’ 버튼을 누른 후, 기본정보 분류항목에서 ‘협의사유 추가’ 버튼을 누르고, 소관부처가 관계부처와 왜 협의를 해야 하는지 ‘협의사유’를 체크한다.



국회입법현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2020. 6. 1

관련자료

행사정보

■ 법제처 검토자 및 분류

▶ 담당자 정보 [법제처]

담당분야 사회문화 법제

▶ 분류항목

협의사유 협의사유 추가 ▼

규제내용 중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예시) 신규 건설의자(예) 등 부속 6개월 이내 건설의 자 및 산부인과 고층 이수이후 부속(안 제30조제2항)

규제조문수 1 2

✱ 의원입법 검토 > 안전함 > 법안 상세 화면 > 수정 화면 > 협의사유 추가

■ 관계부처 지정

관계부처 옆의 '선택' 버튼을 눌러 관계부처 선택 창을 활성화시켜 소관부처가 협의를 해야 할 관계부처를 체크한다.

■ 조문 특정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란에 작성하고 상단 우측의 '저장' 버튼을 클릭 후 수정화면에서 나온다.

저장 취소 목록

국회 검토자료	소관부처 의견	관계부처 의견 (총 0개)	법제처 의견
3 의원입법			

국회 입법정보
 ▶ 법률안 정보

의안명	지방세특별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구자근의원 등 10인, 제2101662호(2020. 7. 8.), 제380회 국회(임시회)	의원원문/ 비용추계서	3 의원입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신축 증축 대수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의 50%(대수선의 경우 25%)를 감감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35%(비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를 감감하고 있음. 산업용 건축물로서 집적하고 입주기업에게 우수한 경영 여건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조세특례는 지속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방 소재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기업은 수도권 기업에 비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지방 소재 산업단지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임.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75%(대수선의 경우 50%)를 감감하고, 재산세는 90%까지 감감하고자 함(안 제 78조제4항).		

소관부처/관계부처
 ▶ 부처 지정/동지

소관부처 선택	관계부처 선택	소요기간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별재원과	0일
기획재정부		0일
국토교통부		0일
산업통상자원부		0일
중소벤처기업부		0일

※ 소관부처 지정 및 의무협의대상 관련 이견이 있을시 해당법안 법제처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부처/기관명	관계부처 지정 및 협의필요 조문 작성	소요기간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75%(대수선의 경우 50%)를 감감하고, 재산세는 90%까지 감감하고자 함(안 제78조제4항).	
국토교통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75%(대수선의 경우 50%)를 감감하고, 재산세는 90%까지 감감하고자 함(안 제78조제4항).	
산업통상자원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75%(대수선의 경우 50%)를 감감하고, 재산세는 90%까지 감감하고자 함(안 제78조제4항).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75%(대수선의 경우 50%)를 감감하고, 재산세는 90%까지 감감하고자 함(안 제78조제4항).	

관계부처 선택

☐ 국경사법회의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
☐ 군사법사법규명위원회
☐ 금융위원회
☐ 기상청
☐ 기술안전위원회
☒ 기획재정부
☐ 난민위원회
☐ 내무부
☐ 녹색자금운용심의회
☐ 농림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촌진흥청

관계부처 추가 선택

* 의원입법 검토 > 안건함 > 법안 상세 화면 > 수정 화면 > 관계부처 지정 및 협의필요 조문 작성

부처통지 메뉴 옆의 ‘배정통보’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이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 법무담당부서에 전달된다.

■ 법제처 검토자 및 분류					
법제처	담당분야 : 행정 법제관명 : 박준수 담당자명 : 박연경 (2020. 7. 9.) 담당자 전화번호 : 044-200-6804				
분류 항목	협의사유	협의사유 > 기타 업무소관(별직 포함)			
	법리	☐			
■ 소관부처/관계부처					
▶ 부처 지정/통지			배정통보	배정통보내역확인 ▼	
구분	기관명	부서/담당자	배정통보일	확인일자	소요기간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부서홍보	2020. 7. 10.	미확인	0일
관계부처 (4개)	기획재정부 외 2개 부처		2020. 7. 10.	미확인	0일
	중소벤처기업부		미통보	미확인	0일

※ 소관부처·관계부처 지정 및 의무협의대상 관련 이견이 있을시 해당법안 법제처 담당자와 유선상 협의 후 정정할 것

* 의원입법 검토 › 안건함 › 법안 상세 화면 › 배정 통보

■ 안건 검토

정부정책의 실현을 지원하는
정무입법 지원센터

[메시지 92](#) |
 [검색](#) |
 [로그아웃](#) |
 [백grund](#)

정부입법	법제해석	의원입법 지원	자치입법 지원	법제시서	법제교육	도움말
-------------	-------------	----------------	----------------	-------------	-------------	------------

[· 의원법률안전검토](#)
 [· 법제처 현황·관리](#)
 [· 국회입법현황](#)
 [· 자료실\(전환/통계\)](#)
 [· 통합검색](#)
 [· 질의답변/FAQ](#)
 [· 의원입법 지원 소개](#)

의원법률안전검토 ▼

- 연건함
- 안전관(관계기관)
- 결재함 1
- 안도함

▶ 법제처 전환·관리

▶ 국회의원현황

▶ 자료실(전환/통계)

▶ 통합검색

▶ 질의답변/FAQ

▶ 의원입법 지원 소개

내부준결

검토불필요

수정

목록

국회 검토자료	소관부처 의견	관계부처 의견 (총 0개)	법제처 의견
 의안원문			

■ 국회 입법정보
 ▶ 법률안 정보

▲ 찾기

의원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구차근의원 등 10인, 제2101662호(2020. 7. 8.), 제380회 국회(임시회)	의원원문/ 비용구제서	의원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평성은 산업단지 등에 상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산속중측·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상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의 50%(대수선의 경우 25%)를 감면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35%(비수도권에는 75%)를 감면하고 있다. 상업용 효율적으로 집적하고 입주기업에게 우한한 경영 여건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조세특례는 지속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방 소재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기업은 수도권 기업에 비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방 소재 산업단지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 상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75%(대수선의 경우 50%)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90%까지 감면하고자 함(안 제 78조제4항).		
입법연혁	19년 확인	관련정부방안	0건
대안의원	임시대안		예산 0 파송함기

법령정보 공유방

검색

안전관련 찾아본 자료

안전관련 법령정보

검토자료(검토보고서등)

법령뉴스(언론보도)

■
▷
◀
+

* 의원입법 검토〉안건함〉법안 상세 화면〉내부 종결, 검토 불필요 처리

안건 검토 > 간단검토, 심층검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검토’의 경우는 수정버튼을 눌러 의견정보 > 법제처 의견란에 협의 필요사항 검토서를 올리면 되는데 방법은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한글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과 자동작성 버튼을 눌러 불러오는 양식에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심층검토’의 경우는 소관부처의 요청이나 법제처 내부의 판단으로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하는데 심층 검토서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의견정보 > 심층검토[법제처] 항목에 올리면 된다.

부처 검토의견

법제처 의견 : 없음

의견서

파일찾기

자동작성

첨부파일

파일찾기

소관부처 의견 [행정안전부] : 없음

행정안전부

0 / 2000

파일찾기

소관부처 중요도

미지정

원안 수용여부

미지정

관계부처 의견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

기획재정부

0 / 2000

파일찾기

중소벤처기업부

0 / 2000

파일찾기

국토교통부

0 / 2000

파일찾기

산업통상자원부

0 / 2000

파일찾기

부처 협의 및 회의 결과

부처협의 결과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없음

이견여부

이견없음

이견있음

협의결과

파일찾기

협의기간

2020. 7. 10. ~ 2020. 7. 25.

첨부자료

파일찾기

법제처 심층검토 : 없음

심층검토

파일찾기

편집

자동작성

회의개최현황 : 없음

저장

취소

목록

* 의원입법 검토 > 안건함 > 법안 상세 화면 > 수정화면 > 간단 검토 또는 심층 검토 작성

159

검토서 파일을 첨부하거나 작성했으면 화면 우측 맨 하단의 저장버튼을 누르고 수정화면에서 나와 방금 첨부한 검토서 파일 옆의 의견통보 버튼을 누르고 활성화되는 창의 메모결재 또는 온나라 결재 절차를 진행해 담당 법제관의 결재를 받으면 해당 검토서가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 담당자에게 통보 된다.

부처 검토의견

▶ 법제처 의견

작성자	박송이	의견통보자	최종진	의견통보일자	2020. 2. 17.
의견서	17. (2021742) 공공자원개방법 추가 검토보고서.hwp				
첨부파일					

▶ 결재정보 [법제처:검토의견서]

NO.	결재자	결재유형	결재결과	처리일시	결재의견
1	박송이	기안	상신	2020.2.11. 14:07	결재 바랍니다.
2	최종진	결재	결재	2020.2.17. 10:15	

▶ 소관부처 의견 [행정안전부]: 없음

▶ 관계부처 의견 [기획재정부 등 42개 부처]

부처	의견	첨부파일
기획재정부	제2021742호 (1. 8.)	제2021742호 (1. 8.)
법제처		
국가보훈처 외 40개 부처		

결재유형 선택

메모 결재 | 온나라 결재 | 취소

부처 협의 및 회의 결과

▶ 부처협의 결과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없음

▶ 법제처 심층검토

작성자	권정아	심층검토 통보자	심층검토 통보일자
심층검토	심층검토(0).hwp (Ver.1)		

의견통보 | 심층검토통보

✱ 의원입법 검토 > 안전함 > 법안 상세 화면 > 간단 검토 또는 심층 검토 결재 진행

② 안전함(관계기관)

법제처 입장에서 안전함(관계기관)은 법제처가 관계부처로 선택되어진 안전을 말한다. 입법안 내용에 법령 정비가 포함되는 경우 정도가 법제처가 관계부처로 선택될 수 있겠다.

③ 결재함

“의원입법 검토 > 결재함”에서는 법제처 안전 담당자 또는 법제관의 메모결재, 전자결재(온나라 기안), 통보현황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결재 권한이 있는 사람(법제관)의 경우 결재할 의원입법 안전 목록이 조회되고 안전명을 클릭하여 결재 승인/반려를 할 수 있는데, 반려 시에는 반려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또한, 통보현황 탭에서는 의원입법 시스템에서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메일 등의 방법으로 국회 심의상황을 통보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④ 완료함

“의원입법 검토 > 완료함” 메뉴를 선택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거나 대안반영 폐기, 철회, 수정가결된 안전의 목록을 볼 수 있다.

03 • 법제처 현황·관리

“법제처 현황·관리”에서는 의원발의 안전 조회 및 통계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회의결과 및 의원입법 관련 자료 관리도 이 메뉴에서 한다.

① 접수배정현황

“법제처 현황·관리 > 접수배정현황”메뉴를 선택하면 법제처 법제관/실무자, 소관부처/관련 부처를 배정해야 할 의원발의안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는 법령 제명의 소속 부처를 기준으로 하여 담당분야/법제관/실무자/소관부처가 시스템 상으로 자동 배정되고 있다. 다만, 검토 불필요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자동으로 배정되지 않는 안전의 경우에는 해당 안전을 클릭하여 수정버튼을 눌러 수정화면에서 담당분야, 법제관, 실무자를 선택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안전검토현황

“법제처 현황관리 > 안전검토 현황”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안전을 각종 검색 값으로 조회하는 기능과 3단계 통보(발의사실, 상임위 상정, 상임위 의결) 서비스 및 소관부처 또는 관계부처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3단계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통보상태 검색 값에서 통보상태 > 상정 미통보 또는 의결 미통보 선택 후 조회되는 법안을 체크하고 우측 상단의 사실통보 버튼을 누른 후 활성화 되는 창에서 상정통보 또는 의결통보를 누르면 된다.

✱ 법제처 현황·관리 > 안전검토현황 > 4단계 통보

③ 안전검토현황 통계

“법제처 현황·관리 > 안전검토현황 통계”메뉴에서는 법제처에서 검토 중인 안전의 통계를 담당자 분야별, 연도별, 소관부처별 등 조건을 정해 조회할 수 있다.

④ 안전분류함, 안전분류관리

“법제처 현황관리 > 안전분류함”메뉴에서는 안전 분류된 의안목록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안전명을 클릭하여 안전상세 화면을 볼 수 있고, 대상을 체크하여 ‘일괄안전분류’를 할 수도 있다. 또한 “법제처 현황관리 > 안전분류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안전분류관리 화면을 조회할 수 있다. 특별히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다.

“국회입법현황 > 국회입법현황” 메뉴에서는 의안발의안 전체 목록을 조회할 수 있고, 정부입법, 의원입법(위원회안 제안 포함) 등 모든 안건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다. 발의구분별(정부/의원/위원장)로 조회가 가능하며 회의일자 및 제안일자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이용해 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간혹 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 및 법제처 담당자 지정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원 법률안 검토 > 안전함’에서 조회가 안 되거나 담당자가 아닌 직원의 안전함에 해당 법률안이 배정되어 있다. 이때에는 국회입법현황 메뉴 법안 상세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 기본정보 담당자정보 부분에서 담당자를 올바르게 지정하면 된다.

② 국회입법현황 통계

“국회입법현황 > 국회입법현황 통계”메뉴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정부입법 및 의원입법 법률안에 대한 통계를 조회할 수 있다. 제안대수별, 연도별, 위원회별, 소관부처별, 담당분야별, 관련 자료별로 검색할 수 있다.

05 • 자료실 (현황/통계)

① 안전현황/통계

“자료실(현황/통계) > 안전현황”메뉴에서는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현황/통계 의안발의안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의안명, 의안번호, 제안일자 등의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안전명을 클릭하면 안전 상세화면을 볼 수 있다.

“자료실(현황/통계) > 안전통계”메뉴에서는 소관부처별/관련부처별 안전통계를 조회할 수 있다. 특별히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다.

② 언론보도 등

자료실(현황/통계) > 언론보도 등” 메뉴에서는 의원입법안과 관련된 주요 언론보도 정보를 볼 수 있다.

06 • 통합검색

통합검색 메뉴를 선택하면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서 작성된 검토의견서, 심층보고서 및 의안 원문, 소관 상임위 심사보고서, 법사위 문서, 관련위 문서 파일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

07 • 질의답변/FAQ

“질의답변/FAQ > 질의답변”메뉴에서는 사용자가 시스템 이용과 관련 기존 질의답변을 조회할 수 있다. ‘질의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새로운 질의 또는 시스템 관련 요청을 할 수 있다. 질의가 등록되면 법제처 담당자가 ‘답변쓰기’기능을 사용하여 답변을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다.

“질의답변/FAQ > FAQ”메뉴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 빈도가 높은 질의답변이나 중요한 내용의 질의답변을 검색할 수 있다.

08 • 의원입법 지원 소개

“의원입법 지원 소개” 메뉴는 의원입법 심사단계별 소관부처, 관계부처, 법제처의 역할 소개 및 법제처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개관과 주요업무를 표로 도식화하여 안내하고 있다.



01 • 법무담당부서의 확인 및 법안 검토 담당부서 지정

법제처에서 소관부처에 발의사실 통보시 해당 부처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의원입법 검토 > 안전함 메뉴에서 각 부처에 배정할 법안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목록에서 해당 법안을 클릭하여 법안 상세페이지로 이동한다.

정부정책의 실현을 지원하는
정부입법 지원센터

메시지 478 | 로그인 |

정부입법 | 법령해석 | **의원입법 지원** | 자치입법 지원 | 법제지식 | 법제교육 | 도움말

• 의원법률안검토 • 국회입법현황 • 자료실(현황/통계) • 통합검색 • 질의답변/FAQ • 의원입법 지원 소개

의원법률안검토

- 안전함
- 안전함(관계기관)
- 검색량 0
- 완료함

국회입법현황

자료실(현황/통계)

통합검색

질의답변/FAQ

의원입법 지원 소개

대 화 창

검토 | 통계

제안대수 제21대 제안일자 ~ 회의일자 ~

국회현황 전체 소관부처 부서배정 전체 소관부처 전체 심층검토 여부 전체

법제처 추진현황 전체 소관부처 추진현황 전체 법제처 결재일자 ~

관계부처 전체 협의결과(과일) 전체 관계부처 의견(과일) 전체 비용추계서 첨부(과일) 전체 이견 전체 클라보기 전체

제안자 검토자 검색어 *의안번호 또는 의안명을 입력해주세요* 검색

※ 부처 지정 및 의무협의대상 관련 이견이 있을 시 해당 법안 법제처 담당자와 유선상 협의 후 의무협의실시여부 결정함(담당자는 해당 법안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전제 146건 (1/8)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일자, 발의자)	국회현황 (추진일자)	국회결과 (회의일자)	법제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소관부처 확인 (확인일자)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381호, 2020. 7. 24. 전재수의원 등 14인)	발의 (2020. 7. 24.)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고용노동부 의안정보수신 (2020. 7. 24.)	미확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370호, 2020. 7. 24. 이용호의원 등 11인)	발의 (2020. 7. 24.)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고용노동부 의안정보수신 (2020. 7. 24.)	미확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361호, 2020. 7. 24.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2020. 7. 24.)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고용노동부 의안정보수신 (2020. 7. 24.)	미확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359호, 2020. 7. 24. 이규민의원 등 14인)	발의 (2020. 7. 24.)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고용노동부 의안정보수신 (2020. 7. 24.)	미확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352호, 2020. 7. 24. 박주민의원 등 11인)	발의 (2020. 7. 24.)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고용노동부 의안정보수신 (2020. 7. 24.)	미확인

- * 안전함에 조회목적이 없다면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마이페이지에서 부서정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회가 안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바란다.)
- * ‘펼치기’(상세검색) 아이콘을 클릭하여 검색 조건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 * 목록에서 의안명을 클릭하여 상세화면을 조회 할 수 있다.
- * ‘엑셀’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엑셀목록을 1,000건 내로 다운로드 하기 바란다. 건수가 1,000건 이상일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의안의 상세정보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상단의 수정 버튼을 누른다. 법무담당부서 직원은 아래 **■ 소관부처/관계부처** 항목에서 해당 법안을 실제 담당할 부서를 지정 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수정화면에서 나와 부서통보 버튼을 눌러 실제 법안을 담당할 담당자 안전함에 해당법안이 배정되게 한다.

의원입법연검토

법제처 연람·관리

국회입법연람

국회입법연람

국회입법연람 통계

차도상(연람/통계)

통법검색

질의답변/FAQ

의원입법 지원 소개

입법정보 공유방

안전관리 찾아본 자료

안전관리 법령정보

검토자료(관보보고서등)

법령뉴스(연보보고서)

대 화 상

☐강달윤(고용노동부)
☐김용석(고용노동부)
☐정창희(고용노동부)
☐전기후(고용노동부)
☐박수현(고용노동부)

내부통보

검토불필요

수정

목록

국회 검토자료	소관부처 의견	관계부처 의견 (총 0개)	법제처 의견

국회 입법정보

입법안 정보

의안명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전제수의원 등 14인, 제2102381호(2020. 7. 24.), 제380회 국회(임시회)

의원함문/비율주거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일 180일의 종료가 얼마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편식적으로 1년의 범위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입법연역

14건

관련정보입법

0건

예산

0

법제처 검토자 및 분류

법제처

담당분야 : 사회문화 | 법제관람 : 장학기 | 담당자명 : 신성임 (2020. 7. 24.) | 담당자 전화번호 : 044-200-6807

분류

법제처

종류

법제처

소관부처/관계부처

부처 지정/통지

구분

기관명

부서/담당자

배정통보일

확인일자

소요기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미통보	2020. 7. 27.	0일
------	-------	--	-----	--------------	----

법제처 검토자 및 분류

담당자 정보 [법제처]

담당분야

사회문화

법제관람

미지정

담당자명

미지정

분류항목

법제처

협의사유

협의사유 추가

법리

소관부처/관계부처

부처 지정/통지

소관부처

선택

부서/담당자

배정통보일

확인일자

소요기간

고용노동부	선택		미통보	2020. 7. 27.	0일
-------	----	--	-----	--------------	----

관계부처

선택

소관부처 - 관계부처 지정 및 의무대상 관련 이견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부처/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부처)

부처 검토의견

법제처 의견 : 없음

의견서

파일찾기

첨부파일

파일찾기

소관부처 의견 [고용노동부] : 없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담당부처 선택

부서명

검색

담당부처 초기화

부서명

고용노동부 > 장관

고용노동부 > 대변인

고용노동부 > 장관정책보좌관

고용노동부 > 자관

고용노동부 > 감사관

고용노동부 > 기획조정실

고용노동부 > 운영지원과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실

고용노동부 > 인력수급정책국

고용노동부 > 통합고용정책국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 안전함 > 법안상세화면 > 수정화면 > 법안 담당 부서 지정

■ 법제처 검토자 및 분류

법제처	담당분야 : 행정 법제관명 : 박준수 담당자명 : 박연경 (2020. 7. 3.) 담당자 전화번호 : 044-200-6804	
분류 항목	협의사유	협의사유 > 기타 업무소관(별직 포함)
	법리	☐

■ 소관부처/관계부처

▶ 부처 지정/통지

배정통보

배정통보내역확인

구분	기관명	부서/담당자	배정통보일	확인일자	소요기간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회계제과 부처통보	2020. 7. 7.	미확인	0일
관계부처 (2개)	법무부		2020. 7. 7.	미확인	0일
	고용노동부		2020. 7. 10.	미확인	0일

※ 소관부처 - 관계부처 지정 및 의무협의대상 관련 이견이 있을시 해당법안 법제처 담당자와 유선상 협의 후 정정할 것

▶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협의필요사항 작성

▲접기

구분	기관명	협의 필요사항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법무부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45조 신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안 제44조 신설).
	고용노동부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45조 신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안 제44조 신설).

■ 부처 검토의견

▶ 법제처 의견

작성자	박연경	의견통보자	박준수	의견통보일자	2020. 7. 13.
의견서	 법제처 의견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wp (Ver.2)				편집 댓글작성 의견통보
첨부파일					

* 안건함 > 법안상세화면 > 법안 담당 부서로 통보



Memo

02 • 소관부서의 의견조회 실시 및 협의결과 등록

소관 부처 담당 부서의 의견조회 실시

해당 법안의 부서 담당자가 안건함에서 법안을 확인 후 해당 법안이 의무협의대상이면 그 즉시 공문을 통한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한다.

* 시스템을 통한 의견 조회는 현재 안 되고 있다. 현재 시스템은 의견 조회 결과를 등록하는 등 관리 차원의 기능만 있다.

※ 관계부처가 지정되어 있고 관련부처 협의 필요사항에 협의 필요 조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의무협의 대상이다. 만약 소관 부처에서 해당 법안이 의무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또는 해당 법안이 타 부처 소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즉시 **기본정보**에서 법제처 담당자정보를 확인 후 법제처 담당자와 전화하여 의무협의 대상 여부에 대해 상의 후 협의 미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제처 검토자 및 분류

법제처	담당분야 : 행정 법제관명 : 박준수 담당자명 : 박연경 (2020. 7. 3.)	담당자 전화번호 : 044-200-6804
분류 항목	협의사유	협의사유 > 기타 업무소관(별직 포함)
	법리	☐

소관부처/관계부처

부처 지정/통지

구분	기관명	부서/담당자	배정통보일	확인일자	소요기간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회계제과과 부서통보	2020. 7. 7.	미확인	0일
관계부처 (2개)	법무부		2020. 7. 7.	미확인	0일
	고용노동부		2020. 7. 10.	미확인	0일

※ 소관부처 - 관계부처 지정 및 의무협의대상 관련 이견이 있을시 해당법안 법제처 담당자와 유선상 협의 후 정정할 것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구분	기관명	협의 필요사항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법무부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45조 신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안 제44조 신설).
	고용노동부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45조 신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안 제44조 신설).

부처 검토의견

법제처 의견

작성자	박연경	의견통보자	박준수	의견통보일자	2020. 7. 13.
의견서	법제처 의견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wp (Ver.2)				편집 댓글작성 의견통보
첨부파일					

소관 부처 담당 부서의 협의 결과 등록 등

소관부처는 자기부처 입장을 아래 보건복지부(예시) 의견 첨부파일에 업로드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는 부처협의 결과정보에 등재한다.

관련 첨부자료가 있으면 첨부자료도 업로드하고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간 법안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면 이견 여부에도 체크한다.

또한 협의기간이 10일 미만일 경우 협의 기간 등록 시 오른쪽에 협의기간 미준수 사유를 등록하는 빈칸이 생성되니 그 빈칸에 미준수 사유를 등재한다.

아울러 협의결과와 시스템 등재와는 별개로 관계부처에서 제시한 이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관계 부처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답변 하도록 한다.

부처 검토의견

▶ 법제처 의견

의견서

파일찾기

법제처 의견서(아동복지법).hwp (Ver.1)

열람

자동작성

첨부파일

파일찾기

▶ 결재정보 [법제처:검토의견서]

▼물치기

결재 결과					
NO.	결재자	결재유형	결재결과	처리일시	결재의견
1	박	기안	상신	2020.7.1. 17:17	결재 바랍니다.

▶ 소관부처 의견 [보건복지부] : 없음

보건복지부

0 / 2000

파일찾기

소관부처 중요도

미지정

원안 수용여부

미지정

▶ 관계부처 의견 [법무부]

법무부

0 / 2000

파일찾기

▲접기

부처 협의 및 회의 결과

▶ 부처협의 결과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없음

이견여부

이견없음

이견있음

협의기간

2020. 7. 27.

~

2020. 8. 11.

협의결과

파일찾기

첨부자료

파일찾기

▶ 법제처 심층검토 : 없음

심층검토

파일찾기

원감

자동작성

▶ 회의개최현황 : 없음

저장

취소

목록

‘소관부처’에서 검토의견서가 작성되었을 때, 소관부처를 변경하면 검토의견서 등의 자료가 삭제된다. 이 경우에 고객센터로 문의 바란다.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매뉴얼

172



01 • 법무담당부서의 확인 및 법안 검토 담당부서 지정

법제처에서 관계부처로 발의사실 통보시 관계부처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의원입법 검토 > 안전함 (관계기관) 메뉴에서 법안 담당 부서에 배정할 법안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목록에서 해당 법안을 클릭하여 법안 상세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정부정책의 실현을 지원하는
정부입법 지원센터

메시지 00 | 검색 | 로그인 | 김

정부입법 | 법령해석 | **의원입법 지원** | 자치입법 지원 | 법제지식 | 법제교육 | 도움말

• 의원입법안내도 • 법제처 현황-관리 • 국회입법현황 • 자료실(현황/통계) • 통합검색 • 질의답변/FAQ • 의원입법 지원 소개

의원입법안내도
• 안전함
• **안전함(관계기관)**
• 검색결과 4
• 완료함

법제처 현황-관리
국회입법현황
자료실(현황/통계)
통합검색
질의답변/FAQ
의원입법 지원 소개

■ 대화창

검토 | 통계 | 도움말

제안대수 [제21대] 제안일자 [] 회의일자 []
국회현황 [전체] 소관부처 부서배정 [전체] 소관부처 [전체] 심층검토 여부 [전체]
법제처 추진현황 [전체] 소관부처 추진현황 [전체] 법제처 결재일자 []
관계부처 [전체] 협의결과(과일) [전체] 관계부처 의견(과일) [전체] 비용추계서 첨부(과일) [전체] 이견 [전체] 골라보기 [전체]
제안자 [] 검토자 [] 검색어 [의안번호 또는 의안명을 입력해주세요] [검색] [입력]
※ 부처 지정 및 의무협의대상 관련 이견이 있을 시 해당 법안 법제처 담당자와 유선상 협의 후 의무협의실시여부 결정함(담당자는 해당 법안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전체 00건 (1/4) [의안과일] [의견과일] [배움과일] [의무협의 대상] [국정과제별만] 1페이지 이하 저장 가능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일자, 발의자)	국회현황 (추진일자)	국회결과 (의의일자)	법제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소관부처 확인 (확인일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373호, 2020. 7. 24. 전용기의원 등 10인)	발의 (2020. 7. 24.)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경찰청 의안정보수신 (2020. 7. 24.)	미확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321호, 2020. 7. 23. 이형석의원 등 18인)	위원회 회부 (2020. 7. 24.)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3.)	경찰청 의안정보수신 (2020. 7. 23.)	미확인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311호, 2020. 7. 23.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회부 (2020. 7. 24.)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3.)	경찰청 의안정보수신 (2020. 7. 24.)	확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304호, 2020. 7. 23. 엄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회부 (2020. 7. 24.)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3.)	경찰청 의안정보수신 (2020. 7. 24.)	확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297호, 2020. 7. 22.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회부 (2020. 7. 23.)	(2020. 7. 23.)	발의사실통보 (2020. 7. 22.)	여성가족부 의안정보수신 (2020. 7. 23.)	확인

■ 법제처 검토자 및 분류

법제처	담당분야 : 행정 법제관명 : 박준수 담당자명 : 박연경 (2018. 8. 27.) 담당자 전화번호 : 044-200-6804	
분류 항목	협의사유	협의사유 > 재정·조세·회계(기재부·행안부) > 국가 재정 부담, 협의사유 > 기타 업무소관(별직 포함)
	법리	☐

■ 소관부처/관계부처

▶ 부처 지정/통지

배정통보

배정통보내역확인

구분	기관명	부서/담당자	배정통보일	확인일자	소요기간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신성숙 부서통보	2018. 8. 29.	2018. 10. 16.	49일
관계부처 (4개)	보건복지부 외 3개 부처	사회서비스지원과 부서통보	2018. 8. 29.	미확인	0일

※ 소관부처·관계부처 지정 및 의무협대상 관련 이견이 있을시 해당법안 법제처 담당자와 유선상 협의 후 정정할 것

▶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협의필요사항 작성

▲접기

구분	기관명	협의 필요사항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관련 공시 및 공개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8조의2제2항)
	법무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6조제2항)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하지 아니한 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장관은 모집자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자 등록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안 제8조의2제1항)
	국세청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관련 공시 및 공개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8조의2제2항)

* 안건함 > 법안상세화면 > 법안 담당 부서로 통보



Memo

국회 입법정보

▶ 법률안 정보

의안명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김정호의원 등 10인, 제2102328호(2020. 7. 23.), 제380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비용구세서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해당 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권리양도 규정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특허가 사업화되기 이전에 소멸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업원이 발명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종업원이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잠재성은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입법연혁

11건		관련정부별안	0건	예산	0
-----	--	--------	----	----	---

대안의안

임시대안

파일찾기

▶ 국회진행현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2020. 7. 24.	
--------	------	---------------------------------	--

■ 법제처 검토자 및 불류

법제처	담당분야 : 경제 법제권역 : 김██ 담당자명 : 김██ (2020. 7. 23.)			담당자 전화번호 : 044-200-6560
-----	--	--	--	-------------------------

[illegible]



법안 목록에서 검색 기능에 관계부처 유무, 협의 결과 첨부 유무, 관련부처 의견 유무, 비용 추계서 첨부 유무 검색 기능을 신설하여 편리하게 필요한 법안을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대수 제21대 발의구분 전체 제안일자 ~ 회의일자

국회현황 전체 의결현황 전체 상임위원회 전체 **비용추계서 전체** 대안폐기예정 전체 법제처 검토의견 전체

안전분류 전체 담당분야 전체 추진현황 전체 소관부처 전체 소관부처 의견 전체 총괄부처 의견 전체

협의결과 전체 **관계부처 지정 전체** **관계부처 의견 전체** 제안자 검토자 검색어 **의안번호 또는 의안명을 입력**

전제 2,291건 (1/115) 자료 20건씩 보기

☐	의안번호 (대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검토현황 (추진일자)
☐ ☆	21023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3인 (2020. 7. 24.)	(보건복지부)	발의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 ☆	21023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4인 (2020. 7. 24.)	(고용노동부)	발의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 ☆	2102380	공역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2020. 7. 24.)	(국민권익위원)	발의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 ☆	210237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2020. 7. 24.)	(행정안전부)	발의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 ☆	210237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2020. 7. 24.)	(통일부)	발의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 ☆	2102377	공유경제기본법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2020. 7. 24.)	(기획재정부)	발의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6.)
☐ ☆	21023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2020. 7. 24.)		발의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 ☆	210237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2020. 7. 24.)	(법무부)	발의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 ☆	21023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5인 (2020. 7. 24.)	(방송통신위원)	발의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또한 소관부처 담당자가 의무협 대상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함에 배정된 법률안 중에서 관계부처와 의무협의를 해야하는 법안만 따로 **협** 표시를 하여 구분하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제안대수 제21대

제안일자 ~

회의일자 ~

국회현황 전체

소관부처 부서배정 전체

소관부처 전체

심층검토 여부 전체

법제처 추진현황 전체

소관부처 추진현황 전체

법제처 결재일자 ~

관계부처 유

협의결과(파일) 전체

관계부처 의견(파일) 전체

비용추계서 첨부(파일) 전체

이건 전체

글라보기 전체

제안자

검토자

검색어 의안번호 또는 의안명을 입력해주세요.

Q 검색

^ 보기

※ 부처 지정 및 의무협대상 관련 이력이 있을 시 해당 법안 법제처 담당자와 유선상 협의 후 의무협의실시여부 결정함(담당자는 해당 법안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전제 1,084건 (1/55)

협의파일

의견파일

비용파일

의무협의 대상

국정과제법안

1천건 이하 저장 가능

	의안명 (의안번호, 발의일자, 발의자)	국회현황 (추진일자)	국회결과 (회의일자)	법제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소관부처 확인 (확인일자)
☐ ☆	중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345호, 2020. 7. 24. 주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회부 (2020. 7. 24.)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4.)	기획재정부 의안접수 (2020. 7. 27.)	확인 협 (2020. 7. 27.)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338호, 2020. 7. 23.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회부 (2020. 7. 24.)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3.)	국토교통부 의안접수 (2020. 7. 24.)	확인 협 (2020. 7. 26.)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337호, 2020. 7. 23.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회부 (2020. 7. 24.)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3.)	국토교통부 의안정보수신 (2020. 7. 23.)	미확인 협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336호, 2020. 7. 23.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회부 (2020. 7. 24.)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3.)	문화체육관광 의안정보수신 (2020. 7. 23.)	미확인 협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330호, 2020. 7. 23.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회부 (2020. 7. 24.)	(2020. 7. 24.)	발의사실통보 (2020. 7. 23.)	특허청 의안정보수신 (2020. 7. 23.)	미확인 협

Memo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180

‘의원입법지원 > 의원법률안 검토 > 안전함’에서는 법제처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법안에 대해 작성한 간단검토서 및 심층검토서를 조회할 수 있다. 검색 후 목록에 나온 법안을 클릭하여 법안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면 간단검토서 및 심층검토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정책의 실현을 지원하는
정부입법 지원센터

메시지 90 | 검색 | 로그아웃 | 김

정부입법 **법령해석** **의원입법 지원** **자치입법 지원** **법제지식** **법제교육** **도움말**

의원입법지원센터 > 의원법률안 검토 > 안전함

의원입법지원센터

- 의원법률안검토
- 안전함
- 안전함(관계기관)
- 결재함 4
- 원문
- 법제처 현황·관리
- 국회입법지원
- 자료실(현황/통계)
- 통합검색
- 질의답변/FAQ
- 의원입법 지원 소개

검토 통계

제안대수 제21대 제안일자 회의일자

국회현황 전체 소관부처 부서배정 전체 소관부처 전체 **심층검토 여부 검토**

법제처 추진현황 검토완료 검토완료 소관부처 추진현황 전체 법제처 결재일자

관계부처 전체 협의결과(파일) 전체 관계부처 의견(파일) 전체 비용주제서 첨부(파일) 전체 이전 전체 클라보기 전체

제안자 검토자 검색어 *의안번호 또는 의안명 등 입력해주세요* 검색 보기

※ 부처 지정 및 의원법률안 대상 이견이 있을 시 해당 법안 법제처 담당자와 유선상 협의 후 의원법률안 심사여부 결정함(담당자는 해당 법안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전체 4건 (1/1)

☐ 의원명 (의안번호, 발의일자, 발의자)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100882호, 2020. 6. 23.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회부 (2020. 6. 29.) 국회결과 (회의일자) (2020. 6. 29.) 법제처 검토완료 (추진일자) (2020. 7. 13.) 경찰청 의안정보수신 (추진일자) (2020. 7. 13.) 미확인

☐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2100608호, 2020. 6. 17. 왕기대의원 등 38인) 위원회 회부 (2020. 6. 29.) 국회결과 (회의일자) (2020. 6. 29.) 법제처 검토완료 (추진일자) (2020. 7. 2.) 여성가족부 의안정보수신 (추진일자) (2020. 7. 2.) 확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351호, 2020. 6. 11. 김진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회부 (2020. 6. 17.) 국회결과 (회의일자) (2020. 6. 17.) 법제처 검토완료 (추진일자) (2020. 7. 2.) 병무청 의안정보수신 (추진일자) (2020. 6. 11.) 미확인

☐ **군 공황 이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0241호, 2020. 6. 8. 이흥범의원 등 15인) 위원회 회부 (2020. 6. 29.) 국회결과 (회의일자) (2020. 6. 29.) 법제처 검토완료 (추진일자) (2020. 6. 25.) 국방부 의안정보수신 (추진일자) (2020. 6. 9.) 미확인

부처 검토의견

- ▶ 법제처 의견 : 없음
- ▶ 소관부처 의견 [경찰청] : 없음
- ▶ 관계부처 의견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			
외 4개 부처	첨부파일			

온나라 접수 의견 등록

부처 협의 및 회의 결과

- ▶ 부처협의 결과 [소관부처 : 경찰청] : 없음
- ▶ 법제처 심층검토

작성일자	김	심층검토 통보일자		심층검토 통보일자	
심층검토	검토의견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0882).hwp (Ver.1)				

심층검토통보

▶ 결재정보 [법제처:심층보고서]

결재 결과					
NO.	결재자	결재유형	결재결과	처리일시	결재의견
1	김	기안	상신	2020.7.13. 11:16	결재 바랍니다.
2	박	결재	결재	2020.7.13. 11:17	

▶ 회의개최현황 : 없음

협의회 요청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181

이 밖에도 메뉴의 질의답변/FAQ > 질의답변 메뉴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질의한 모든 질의답변을 조회할 수 있다.

-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쓰기’ 버튼을 사용하여 답변을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다.
- * ‘질의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질의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질의/답변 ▾

의원입법 ▾ 전체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검색

전체 2건 (1 / 1)

[의원입법]

법제처 () | 2017. 12. 19.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제처의 조정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답변쓰기

법제처 () | 2017. 12. 19.

정부에 드리는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에 첨부 후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을 수신자로 지정하여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요청 공문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 (서식)정부입법정책협의회 신청서.hwp

답변 0 | 댓글 0

[의원입법]

법제처 () | 2017. 12. 19.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심층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답변쓰기

법제처 () | 2017. 12. 19.

정부에 드리는 심층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에 첨부 후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을 수신자로 지정하여 심층검토 요청 공문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 (서식)심층검토 신청서.hwp

답변 0 | 댓글 0

질의 등록

법령입안심사기준 ▼

■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질의/답변" 코너는 누구든지 질문하고,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업 공간이며, 여기에 등록되는 모든 질의/답변 내용은 인터넷에 바로 공개됩니다.

■ 따라서, 질의/답변 내용에 개인정보, 정책/처분 등과 관련된 질의, 비밀정보 등을 절대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 아울러,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 등은 "법령해석" 및 "자치입법 지원" 메뉴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하기

저장

취소

- * 구분을 선택하고, 질의내용을 작성한다.
- * 첨부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다.
-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FAQ

메뉴의 질의답변/FAQ > FAQ 메뉴를 선택하면 문의가 잦은 질문, 또는 중요하게 사용되는 설명 자료를 조회 할 수 있다.

FAQ ▼

의원입법 ▼

전체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Q 검색

전체 2건 (1/1)

[의원입법]

법제처 () | 2017. 12. 19.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제처의 조정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 하나요?

법제처 () | 2017. 12. 19.

첨부해 드리는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에 첨부 후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을 수신자로 지정하여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요청 공문을 시령하시면 됩니다.

(서식)정부입법정책협의회 신청서.hwp

0

0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6장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2. 의원입법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3. 주요 홈페이지 안내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9. 11. 14] [대통령령 제30045호, 2019. 8.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①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13.>

② 법제처장은 법령의 합헌성, 합법성 및 통일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신설 2019. 8. 13.>

[전문개정 2010. 10. 5.]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한다.

제5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 계획의 작성방법, 제출 시기,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6조(부처입법계획의 내용) ① 제5조제2항의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에는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입법 추진배경,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와 관련 단체 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일정에는 입안 시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계획, 입법예고 및 공청회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처 제출 시기, 국회 제출 시기 및 시행 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7조(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와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률안의 국회 제출은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0. 5.]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수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수정 요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 중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거나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률안의 입법 추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10조(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내용 또는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10조의2(중·장기 입법계획)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장기 예측가능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장기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10. 10., 2017. 12. 29.>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 일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4.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법령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1. 22.>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

(推計書)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및 공포 등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입법에 관한 협의, 의견 조정, 그 밖에 정부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2013. 10. 10., 2017. 5. 8., 2019. 3. 12.>

[전문개정 2010. 10. 5.]

[제목개정 2014. 11. 19.]

제11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조직·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5. 8.>

③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8. 28., 2019. 8. 13.>

④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 또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조정기관의 조정을 신속히 거쳐 국회의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의 심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4. 11. 19.>]

제11조의3(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0. 10., 2014. 11. 19.>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6. 9.]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4. 11. 19.>]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률안의 국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상호 협조하여 정부의 입법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변경되거나 폐기되고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과 신속히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5. 8.>

④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이견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0. 5.]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제11조의3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부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2.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4.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 및 대책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④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1.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입법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협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 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5. 8.>

[전문개정 2010. 10. 5.]

제13조(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 ①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붙여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 및 이유를 심사·검토하고, 부처 간 협조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4장 국민의 입법 의견 수렴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7., 2013. 1. 22.>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22.>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5.]

제15조(예고방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17. 5. 8.>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5. 8.>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2017. 5. 8.>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6.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0. 20., 2017. 5. 8.>

⑤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0. 10. 5.]

제16조 삭제 <2004. 1. 9.>

제17조(법령안의 복사비용)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법령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 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19조(제출의견의 반영 권고)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 또는 입법체계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8. 28.]

제19조의2 삭제 (2017. 5. 8.)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0.>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0.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0. 10. 5.]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21조(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 ①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그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3.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②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도 보내야 한다. 다만,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한 법령안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낸 법령안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조약안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이 심사 요청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절차 또는 규제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 또는 조약안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령안
 3.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4. 정부정책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심사 요청된 법령안의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5. 그 밖에 입법 추진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 ⑤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법 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7.>
- [전문개정 2010. 10. 5.]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1.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2.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3. 그 밖에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률 및 하위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 ④ 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마련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10. 5.]

제23조(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심사결과 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0. 5.]

제23조의2(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① 법제처장은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대통령령을 공포하거나 총리령안·부령안·대통령훈령안·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포 또는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0. 27.]

제6장 법제의 정비·개선 등 <개정 2007. 2. 2.>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7.>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령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법제처장은 법령 등의 정비·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24조의2(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하 “제도개선사항”이라 한다) 중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법령 중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법령과 그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하위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 등 제도개선사항을 총괄적으로 발굴·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하위법령 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하위법령의 일괄정비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제처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일괄정비를 요청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7.]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 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28.]

제25조(훈령·예규등의 사전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또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3.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다른 훈령·예규등과 중복·상충되는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8. 28.]

제25조의2(훈령·예규등의 사후 심사·검토) ① 법제처장은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예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령·예규등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개별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정비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정비계획
3.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본조신설 2018. 8. 28.]

제7장 법령해석 <개정 1999. 10. 30.>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별치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해석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청을 받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법령해석기관으로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 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3.>

1.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한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첨부하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해석기관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때에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1.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받은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령해석 요청 의뢰가 제8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한다고 민원인에게 통지한 경우

⑩ 제1항, 제4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⑪ 법령해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다. 다만, 제9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법령해석기관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 8. 13.>

1. 법령해석 요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법령해석 요청이 제8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5.]

제26조의2(훈령·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를 받는 등 소관 훈령·예규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에 소관 훈령·예규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훈령·예규등의 해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제27조(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①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2.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확인할 것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② 법령해석기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할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령해석기관은 제26조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령해석 요청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8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을 의뢰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법령해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2. 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3. 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쟁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결과
4. 법령해석과 다르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이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해석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0. 5.]

제27조의2(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150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27.>

③ 위원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 지명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명위원은 국무조정실을 포함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1.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27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2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와 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2.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3. 제26조제7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 ⑥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건축, 세제, 환경 및 노동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7.>
[전문개정 2010. 10. 5.]

제27조의4(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전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 10. 5.]

제27조의5(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 5. 8.]

[종전 제27조의5는 제27조의6으로 이동 <2017. 5. 8.>]

제27조의6(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의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2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6은 제27조의7로 이동 <2017. 5. 8.>]

제27조의7(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2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7은 제27조의8로 이동 <2017. 5. 8.>]

제27조의8(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2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8은 제27조의9로 이동 <2017. 5. 8.>]

제27조의9(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6. 9.]

[제27조의8에서 이동 <2017. 5. 8.>]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8조(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8. 13.>

1.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시행
2. 법제업무 담당조직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3. 소속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인사관리기준의 제정·시행
-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감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2. 제14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3. 제22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 그 밖에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제업무
-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3.>

[전문개정 2018. 8. 28.]

제29조(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법령안의 입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려는 법령안에 대하여 입안지원을 하거나 법적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제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등 법제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자문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1. 19.]

[제목개정 2018. 8. 28.]

제29조의2(법제교육)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 입안·해석, 자치법규 입안·해석,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법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법제교육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제처장은 필요한 법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①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자치입법 지원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3.〉

③ 법제처장은 우수한 자치입법 활동을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3.〉

④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3.〉

[본조신설 2014. 11. 19.]

제29조의4(수당) 법제처장은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30조(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해당 소관기관·관계 기관 통보 및 의견 수렴
3. 정부의 입법 단계(입법예고부터 법령안 공포까지의 단계를 말한다)별 법령안 등 입법정보 공개 및 제출의견 접수
4. 법령안·대통령훈령안·국무총리훈령안의 입안 및 심사
5. 훈령·예규등에 관한 심사·해석
6. 법령해석 안전의 검토 및 결과회신
7.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원
8. 법령정보(훈령·예규등, 자치법규, 법령해석례, 자치법규 지원사례, 그 밖에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법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8.〉

③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령·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그 밖에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5. 8.〉

④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전문개정 2010. 10. 5.]

[제목개정 2017. 5. 8.]

부칙 〈제30045호, 2019.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에 대한 소관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 이후 발의되는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총리령 제1550호, 2019. 6. 28, 일부개정]

법제처(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0-65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7.>

1. 입법의 필요성

-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 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 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 가. 다른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 나. 입법 내용이 해당 법령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 가.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 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전문개정 2010. 10. 14.]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 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하여 해당 입법이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5.>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5.>

[전문개정 2010. 10. 14.]

[제목개정 2017. 5. 15.]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11조 제3항에 따라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財政所要推計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 증가

2.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법률에서의 재정소요추계 규모보다 재정부담이 현저히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의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안 명 및 관련 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용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의 결과

다. 재원조달의 방법

3. 작성자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10. 14.]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① 제5조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 한정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법령안의 내용 중 재정부담 증가사항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연간 500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7조(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①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8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대상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할 때에는 법령안에 재정 소요추계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7.>

[전문개정 2010. 10. 14.]

제3장의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신설 2004. 2. 13.>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명백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특정해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8. 29.>

1. 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상호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3.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4. 조직의 신설·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
 5.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6. 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7.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협의 시점(始點)을 달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⑤ 법제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 2. 17.]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제9조 삭제 〈2013. 1. 22.〉

제10조(제출의견의 반영)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2017. 5. 15., 2019. 6. 28.〉

1.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관한 사항
- 3의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소요추계서(제5조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7.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 이유서
 8.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 및 형식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률안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제때에 실현하고 법령 단계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 하위법령안이 가능하면 해당 법률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 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① 법제처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13조의3 삭제 <2012. 10. 4.>

제6장 법제의 정비·개선 등 <개정 2007. 2. 2.>

제14조(법제정비의 추진절차)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령정비의 추진에 관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 희망 법령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제처장은 자체적으로 법령정비 대상을 조사·발굴하고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정비계획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법령정비안 및 영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취합하여 전체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 법령정비 실적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10. 4.]

제15조(국민법제관) ① 법제처장은 영 제2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정비·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문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법제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국민법제관의 분야별 구성 및 운영, 국민법제관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4.]

제16조 삭제 <2012. 10. 4.>

제17조(법제정비실무협의회의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① 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분석, 정비 대상 법령의 정비안 마련 및 법제정비실무협의회의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본부·실·국의 주무과 또는 팀의 장 및 법무·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18조 삭제 <2010. 10. 14.>

제19조 삭제 <2018. 8. 29.>

제20조(훈령·예규 등의 사전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② 법제처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을 검토하는 경우 그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29.]

제7장 법령해석

제21조 삭제 (2005. 7. 1.)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② 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③ 영 제2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9.>

[전문개정 2010. 10. 14.]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15.>

1. 법령해석심사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전문개정 2010. 10. 14.]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24조(법제업무 지원) ① 법제처장은 영 제29조·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입안지원 등 법제

지원, 법제교육,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7., 2018. 8. 29., 2019. 6. 28.>

②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부칙 <제1550호, 2019.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25.] [국무총리훈령 제696호, 2017. 10. 25., 타법개정]

법제처(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044-200-68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및 정부·국회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심의 과정에서 주요내용이 수정된 법률안(이하 “적용대상법률안”이라 한다)의 심의·의결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원발의법률안의 통보 등) ①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이 제안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법률안 소관부처(이하 “소관부처”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관부처의 장은 당해 법률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등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4. 15., 2014. 12. 31., 2017. 10. 25.>

③ 소관부처의 장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법리적 쟁점 소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조세의 감면, 재정지출의 증가, 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인원의 소요, 규제의 신설·강화, 정부정책의 변경 등 그 주요내용의 수정에 관한 논의가 있거나 수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예상되는 쟁점 등을 검토하고, 관련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6. 4.>

④ 소관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법률안이나 제3항에 따른 수정사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부처의 장에게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과 필요한 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4.>

1. 헌법에 위반되는 등 중대한 법리상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률과의 상충이 명백한 경우
2.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3. 조직의 신설·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인원의 소요가 있는 경우
4. 규제를 신설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제4조(적용대상법률안의 검토 및 의견통보) 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대상법률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소관부처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 7. 10., 2013. 4. 15.>

1. 법리적 쟁점의 유무 여부
2.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3. 조세의 감면 여부
4.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5.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6.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7. 입법정책상 부처간 이권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 유무 여부
- ② 제1항제4호에서 “재정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7. 10.>
 1. 국가의 일반회계의 증가 또는 특별회계의 신설·증가
 2. 기금의 신설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3. 부담금의 신설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의하여 설치된 부담금의 증가
- ③ 법제처장은 적용대상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1항제5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그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개정 2008. 7. 10., 2013. 4. 15., 2014. 12. 31., 2017. 10. 25.>
- ④ 법제처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부처에 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5조(관련부처의 장의 의견 청취 등) ① 소관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조세의 감면, 재정지출의 증가, 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인원의 소요, 규제의 신설·강화, 정부정책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6. 4.>

② 관련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률안 중 그 관장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은 제시된 의견을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제처와 관련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6조(의견의 사전조정 등) ①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장의 의견과 관련부처의 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소관부처의 장은 관련부처의 장과 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관련부처의 장은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에게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6. 4.>

③ 제1항에 의한 협의에 불구하고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실무협의회에서도 의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관련부처의 장은 협의회 의장에게 부처간 협의를 위한 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의 의장도 협의회 의장에게 협의회 소집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라 한다)에 협의·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6. 4., 2017. 10. 25.>

⑤ 협의회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협의회에서도 정책적 판단 등을 원인으로 부처간 의견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장에게 해당 안전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4.>

⑥ 법제처장은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안전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국정현안점

검조정회의에 협의·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4., 2013. 4. 15., 2017. 10. 25.>

⑦ 소관부처의 장은 법제처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소관부처의 의견에 반영하거나 반영여부에 관하여 법제처장과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⑧ 법제처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처가 이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실무협의회 또는 협의회에 이를 상정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7조(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협의
2. 적용대상법률안에 조세감면의 필요, 재정지출의 증가,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규제 신설·강화 또는 그 밖에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대응방안 협의
3. 의원발의법률안의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소관부처 협의
4. 그 밖에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한 협의

[전문개정 2010. 6. 4.]

제8조(협의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집된 실무협의회에서도 부처간 의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관부처나 관련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6조제8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협의회에서 협의하게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4.]

제9조(전담인력) 법제처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둔다. <개정 2010. 6. 4.>

제10조(협의결과와 보고) 법제처장은 제6조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협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그 협의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11조(소관부처의 장의 국회의견제출 등) ① 적용대상법률안의 소관부처의 장은 당해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거나 발언함으로써 당해 법률안에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3조에 의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제14조에 의하여 기관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관련부처의 장이 제1항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거나 발언한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 보고) 법제처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입법반영을 위하여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8.>

제13조(국무회의의 보고) 법제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용대상법률안의 입법추진상황 및 정부대응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14조(중앙행정기관평가 자료 활용) ① 국무총리는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조 및 제11조제1항 등에 따른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의 대응노력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평가 실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0., 2010. 6. 4.>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처나 관련부처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6. 4.>

[제목개정 2010. 6. 4.]

부칙 <제696호, 2017. 10. 25.>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절

의원입법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Q1

국회에서 각 부처에 공문으로 기간을 정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협의를 안될 경우에는 개별 부처의 의견을 국회에 송부할 수 있는지?

국회에의 의견제시 요구 유무에 관계없이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가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부처 간 의견협의를 후 정부의 조율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국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속히 협의하여 의견을 제출하되, 합의 전에 의견제시를 해야 하는 경우 관련부처의 이견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2

부처에서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보내주면 법제처에서 국회에 의견제출 등 대응을 하는 것인지?

소관부처가 부처 간 의견협의를 및 국회에 의견제출 등 의원입법에 대한 대응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제처도 각 부처에서 법제처에 제출한 검토의견과 법제처 검토의견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정부 의견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3

부처 간 의견협의를 되지 아니할 경우 법제처에서 의견조정을 해주는 것인지?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정부 입법정책협의회는 ① 소관부처 또는 관계부처가 신청이 있거나, ② 법제처가 직권으로 안건을 선정하는 경우에 개최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홈페이지 주소
법 제 처		http://www.moleg.go.kr
국 가 법 령 정 보 센 터		http://www.law.go.kr
정 부 입 법 지 원 센 터		http://www.lawmaking.go.kr
대 한 민 국 국 회		http://www.assembly.go.kr
국회상임 위원회	국 회 운 영	http://steering.na.go.kr
	법 제 사 법	http://legislation.na.go.kr
	정 무	http://policy.na.go.kr
	기 획 재 정	http://finance.na.go.kr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http://seience.na.go.kr
	교 육 문 화 체 육 관 광	http://educulture.na.go.kr
	외 교 통 일	http://uft.na.go.kr
	국 방	http://defense.na.go.kr
	행 정 안 전	http://adminhom.na.go.kr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http://agri.na.go.kr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http://industry.na.go.kr
	보 건 복 지	http://health.na.go.kr
	환 경 노 동	http://environment.na.go.kr
	국 토 교 통	http://ltc.na.go.kr
	정 보	http://intelligence.na.go.kr
	여 성 가 족	http://women.na.go.kr
	예 산 결 산 특 별	http://budget.na.go.kr
	윤 리 특 별	http://moral.na.go.kr
국회입법 지원기관	국 회 사 무 처	http://nas.na.go.kr
	국 회 도 서 관	http://www.nanet.go.kr
	국 회 예 산 정 책 처	http://www.nabo.go.kr
	국 회 입 법 조 사 처	http://www.nars.go.kr
국회정보 시스템	의 안 정 보	http://likms.assembly.go.kr/bill
	열 린 국 회 정 보	https://open.assembly.go.kr
	법 률 지 식 정 보	http://likms.assembly.go.kr/law
	입 법 예 고	http://pal.assembly.go.kr
	국 정 감 사 정 보	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s
	예 산 · 결 산 정 보	http://likms.assembly.go.kr/budget
	영 상 회 의 록	http://w3.assembly.go.kr/vod
	회 의 록	http://likms.assembly.go.kr/record
	인 터 넷 의 사 중 계	http://assembly.webcast.go.kr
	미 디 어 자 료 관	http://w3.assembly.go.kr/multimedia
	맞 춤 입 법 콘 텐 츠	http://naph.assembly.go.kr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발행 2020년 12월

발행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044) 200-6805

디자인·인쇄 (주)삼일기획 044) 866-3011

이 책의 저작권은 법제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 법제처, 2020